

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0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 62. 범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 63. 범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 64. 범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 65. 범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 66. 범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
-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71.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종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상정된 안건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16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17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17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17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17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7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17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17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7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7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7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7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7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7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7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7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7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17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17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1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1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17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1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17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17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17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1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17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17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17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17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17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17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17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17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17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17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17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17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18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1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18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18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18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18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18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18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18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18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18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18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18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18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1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1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18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18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1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18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18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18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18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18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18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18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18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18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18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18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18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1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1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18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18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18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18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18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19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19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19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19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19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1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19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19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19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1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19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9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9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9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19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1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19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1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9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9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9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9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9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9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9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9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9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9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9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20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20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20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0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0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2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20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2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2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0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20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20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2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20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0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20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0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20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2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20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2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2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20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0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20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20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2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0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20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2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20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2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20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20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20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21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21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21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21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2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21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2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21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2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21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21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21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21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2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2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21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21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21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21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2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21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2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21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2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21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2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21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21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2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2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21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21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21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21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2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21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21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21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22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22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22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22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2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2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2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2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2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2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2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2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2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2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2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2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2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2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2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2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2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2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22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2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3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3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3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3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3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3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3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3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3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3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3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3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3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3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3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3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4)	23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3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3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3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3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3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3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3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3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3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3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3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3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4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4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4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4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4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4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4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4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4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4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4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4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4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4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4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4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4
289.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4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4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24

(09시37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
-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소위원장 박수영**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III-2라고 표기돼 있는 자료 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III-2, 아마 페이지로는 146페이지가 될 겁니다. III권을 두 권으로 분권한 것이기 때문에요. 146페이지를 보시고요.

18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5년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마 청년층이 소득 수준도 낮고 자산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5년간 목돈을 예치하여서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단축할 경우 주거비용 마련 등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약간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청년의 자산 마련을 위해서 장기간 예치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작년 부대의견에서도 지적이 됐고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수요를 보니까 5년이나 자금이 묶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4년 현재 계좌 유지하고 계신 비율이 한 88%로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3년으로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를 하고, 다만 정부지원금을 좀 줄이는 것으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 임광현 위원 당초 취지가 목돈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에 납입하는 금액이 7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3년 납입해 가지고는 당초에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얘기했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직 같은 경우는 많아졌기 때문에 그 기간 단축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이를 하더라도 계속 불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초 정책대로 유지해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심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5년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3년 전에 조기 환급을 했을 때 혜택을 좀 줄이면서 비과세 혜택까지만 주자.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도 주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부분 추징은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런데 그 제도 때문에 5년을 유지할 텐데 그것 무너뜨리면 3년 정도 지났을 때 해지하고 싶은 유혹에 아마 청년들이 많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청년정책에 관심 많은 신영대 위원님과 천하람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영대 위원 임광현 위원님 존경하고, 세금을 좀 깎아 주라는 분이 갑자기 국세청 모드로 전환되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 임광현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걸 유지시켜야 애들이 좀 모으니까……

○ 신영대 위원 제가 초선 때 산자중기위에 있으면서 보니까, 여기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청년들이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실제 월 급여 실수령액이 한 250만 원,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할 때는 나름 목돈 마련해 보자고 딱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 당장 쓸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해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혜택받았던 세금까지, 비과세 받은 것을 토해 내라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다 여유가 있어서 5년을 채우면 좋지요. 그런데 여유가 없어서 해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리 없겠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이게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과세 혜택을 합치니까 3년을 유지하면 최대 6.9% 정도, 그런데 대신에 5년을 유지하면 최대 8.9% 정도 혜택을 주는 건데 이런 식이면 그래도 일차적으로 3년, 그다음에 조금만 버티면 5년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5년이 안 되면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 식인 것보다는 저는 이 정도의 제도 설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정부안 만든 취지가 방금 천하람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딱 그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왜 4년은 고려 안 하고 5년, 3년…… 짹수는 잘 안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모든 일에 홀수를 좋아하는 게 우리 문화다 보니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홀수를 좋아한다고요.

임광현 위원님, 어떡할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청년들 어려움 자꾸 말씀하시는데……

○**임광현 위원** 대세가 그러면, 저는 그 유혹을 어른들이 잡아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소위원장 박수영** 글쎄, 그런 말씀도 옳으신 것 같은데 또 현실적으로 청년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50페이지,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서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에 대해 1인당 매입액 2억 원 이하의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매입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매입분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개인 국채 투자의 활성화와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개인투자용 국채가 올해 6월 처음 발행돼서 현재도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제도 활성화 및 정책 홍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이 있으므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채에 대한 특례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협용한다는 점에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외국의 경우 이렇게 개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 별도의 과세 혜택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국채시장의 발전 정도가 다르다는 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제도 시행 초기고 저희도 세제 측면 말고 다른 측면에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게 너무 장기로 하다 보니까 개인의 투자가, 청약도 생각보다 많이 줄고 있고 해서 다른 측면에서도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데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하셔서 특례 기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정부 측 요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제도 초기다 이거지요? 이게 24년에 시작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23년 4월에 과세특례가 돼서 24년 6월에 처음 발행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1년 반 정도 지났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개인 투자용 국채는 사실 기재위 통과하는 것도 몇 번 만에 통과했고 어렵게 국회에서 제도화해 주셨고 지금 발행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고. 물론 금년도 1조 중 한 7000억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이종욱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제도를 키워 나가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10년물, 20년물만 하고 있는데 5년물을 한다든지 중도환매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부 측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기간 연장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이요.

○**전문위원 이정은** 157페이지, 우리아이자립펀드 비과세 혜택 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광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아마 이 법 통과 후에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일단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대해 가입자인 아동이 18세 되는 날까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보호자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적립한 보호자적립금에 대한 중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법은 지금 보건복지위 어디쯤 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은** 법안소위에 상정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상정만 해 가지고 심의는 안 돼 있고 일정도 안 잡혔고?

○**전문위원 이정은** 예.

○**소위원장 박수영** 계류돼 있는 상황이군요.

임광현 위원님, 이것 어차피 법이 통과되어어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통과

되면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62페이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6건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6건의 개정안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이른바 착한임대인 소득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적용 기간을 삭제하여 제도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6건 중 박희승 의원님 안은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7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상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해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히 세액공제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액공제율 70%가 조세특례 적용 후 세후 소득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동 제도의 실효성, 효과성이 제한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제도는 사실 좋은 취지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22년 심층평가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임차료 감소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는 정부안 수준으로 일단 유지하는 걸로, 제도 경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정부 측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전문위원이 80%로 하게 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정부 측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제도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이 제도가 50% 공제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를 10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500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수입 줄어든 것의 절반, 250만 원은 본인이 내야 될 세금에서 깎아 주겠다. 그래서 250만 부담하고 250은 정부가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 250도 순수하게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5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원래 500만 원에는 세금 한 1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중간 정도 세율로 보면 한 30% 정도로. 그래서 원래 500만 원도 자기 돈은 사실은 35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150만 원은 세금이고.

그런데 임대료를 1000에서 500으로 깎아 줬을 때 기본적인 내야 될 세금 150만 원이 줄어들고 거기다가 정부에서 또 250만 원을 돌려주니까, 그러면 4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100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올리자, 사실상 거의 전액을 보상해 주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리더라도 사실상 본인의 소득은 850이 유지가 되게 해 준 게 70%고요.

저희들이 또 1억 초과자에 대해서는 50%밖에 안 해 주는 이유가, 1억 초과자는 세금이 50%다 보니까 1000에서 500만 원으로 내려가도 본인의 소득은 25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250은 당연히 정부에 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정부가 250을 돌려주니까 500 깎아 줘도 본전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50, 어떤 경우는 70, 70이 맥시멈이다. 만약에 80, 90, 100 가면 정말 재산이 있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0원 같 겁니다. 0 원 가면 오히려 더 이득이거든요, 다른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래서 70이 맥시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관님이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한데 이건 코로나 시대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고요. 정말 착한 임대인이라면 앞으로는 좀 더 선의에 기대서, 본인의 부담을 좀 더 늘려 가면서 임대료를 인하해야지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착한 임대인의 어떤 부담을 줄여 주는 건 조금 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거나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80%로 상향하자는 박희승 의원님 안으로 가면 역전이 생겨서 오히려 더 이득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공제기간도 일단 1년 정도만 연장하고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아직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임대사업자가 공제율이 높아져서 0원이 되고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가 매우 높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높아진 경우도 많고요. 원래 과거 80년대, 90년대 보면 전체 매출의 30%가 원재료비 그리고 한 30% 정도가 임대료 포함한 관리비 그리고 한 삼사십 %를 수익으로 가져갔던 구조가 이제는 특히나 체인점화되면서 10%, 20% 내로 완전히 수익 구조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난 부분 중의 하나가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소득자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결국은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되고 있는 거다. 단지 코로나 시기에만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도와줬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효과, 굳이 임대료를 높이지 않아도 우리가 낮춰 주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내 수익은 별 차이가 없지만 임대인에게 도움이 되면 당연히 그런 정책들은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라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고. 저는 지금 이걸 80%로 올리자 이런 의견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기재부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임대료를 낮추는 입장에서 1년 단위로 자르면 부담스러워요. 한마디로 임대료를 낮춰 줬는데 1년 있다가 이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나한테 돌아올 게 없네, 내가

공제를 못 받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정하면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최소한 2년 정도는, 염태영 의원님 안처럼 한 2년 정도 해 줘야 임대인 입장에서 자기가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신영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정부의 세금으로 하느냐, 임대인이 선의로 하느냐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임대료가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 조세재정연구원 통해서 한 결과로는 별로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증거가 없다,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게 있어서 우선 1년씩 해 보면서 증거를 좀 보자라는 취지로……

○**신영대 위원** 그 증거가 1년짜리라 그런다니까요. 임대료 보면 1년 낮추는데 계약기간은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윤호중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윤호중 위원** 신영대 위원님 열띠게 말씀하시는 데 상가임대차계약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가 2년 계약이고요.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간 보장이 돼서 1년 단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계약 임대료보다 낮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낮게 한, 그러니까 인하해서 계약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에게 주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당초 계약보다 낮게 받는 경우입니다.

○**윤호중 위원** 계약보다 낮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다음에 일정 기간 낮게 받고 또 그 계약을 유지하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다시 그게 연장이 되면 계속 그것은 착한 임대인 자격을 유지하는 거지요.

○**윤호중 위원** 만약에 계약을 아예 낮췄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처음부터?

○**윤호중 위원** 아니, 착한 임대인으로 깎아서 임대료를 받다가 1년 계약 만료해 가지고 계약 금액을 낮췄어요, 임대료를. 그런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개신할 때 그것보다 더 낮춰야 된답니다, 개신 시기에서.

○**윤호중 위원** 낮춰서 받은 것보다 더 낮출 때만 또 적용이 된다? 그것을 다 체크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당연히 내도록 돼 있고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에 계약서를 제출한 것도, 인하하기로 합의한 둘 사이의 합의문 또 거기에 따른 통장사본 이런 걸 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알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저도 연달아 물어……

딱 1년만 혜택 보는 거네요, 그러면? 한마디로 월세를 10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으로 낮췄어요. 낮췄는데 500만 원 낮춘 것에 대해서는 혜택은 1년만 보고 딱 끝나네? 다음에 하려면 계약 연장할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러니까 인하한 기간 동안만 해 주는 겁니다.

○신영대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윤호중 위원 석 달 인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신영대 위원 아니, 예를 들면 1년 계약해서 500을 깎아 줬는데 그다음 연도에 깎아 준 500 내용이 그대로 계약이 유지돼, 그러면 그다음 연차에도 공제를 받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계약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임대료가 올라가는 식으로 계약이 되기는 합니다만 다른 이유로도 다시 임대료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했거나 전년보다 낮췄거나 하는 걸로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요.

○오기형 위원 기본적으로 정부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역진성 문제는 서로가 건들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던 것들이, 22년 조세연구원 결과가 부족하다면 기간을 1~2년 연장하는 것은 그건 큰 논점은 아니지 않느냐. 2년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임대인이라는 정책 자체가 세액공제 방식이 부적절하다면 다른 식의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다 논의할 주제는 아니지만 정책이 늘…… 그러니까 여기에다 다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계속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또 다른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코로나 때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는 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이게 조특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 상가 건물을 2021년 6월부터 계속 임차한 임차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고 중간에 새로 임차인이 변경됐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고쳐서 치유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안 되는 사항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당연히 정부 또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만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결국은 임차인의 어떤 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임대인의 결정에 의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예외적으로 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순수하게 선의에 기대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기 이전에 굉장히 임대료가 높았던, 어쨌든 코로나 이전만큼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그렇게 임대를 했던 분들이 코로나 시기를 벗어나는 과정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한 아주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제도고요.

그걸 상시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또 새롭게 계약하신 분, 작년에 계약한 분 또 내년에 계약한 분 그렇게까지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 제도를 이렇게까지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연장하면서도 코로나 때 위기를 겪었던 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연장하다가 나중에 폐지하든지, 상설화할 때는 그 논점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일단 1년 연장을 하면서 기재부가 또다시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한 번 더 주든지 그래서 내년 심의할 때는 본격적으로 2년 할 건지 영구화할 건지 아예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요 그러면 조세재정연구원이 감면 요청을 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임대료를 감면하고도 다른 세금 감면받을 것이 별로 많지 않다든가 이래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한 건지 그걸 좀 명확히 파악해 보시고 실태를 정확하게 내년에는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윤호중 위원님 말씀 맞으신 것 같아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방법론부터 다시 제대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대로 잠정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국내여행지원금 소득공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국내여행지원금 중 숙박·교통 비용 지원금에 대해서 연 20만 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여행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행지원금 등 숙박·교통에 사용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께서도 자료 172페이지에 쓰셨지만 문체부 중심으로 현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라고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재정 사업이 있습니다. 임광현 의원님이 어떠한 취지로 제안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원 여건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상황하에서 굳이 이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재정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이 옳지 않나 하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재정 사업으로 연간 40만 원 여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지요, 재정 20만 원 더 도와줘 가지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이 법안을 낸 취지는 내수 활성화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내수 상황이 위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체부 지원도 엄청 제한적이어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낸 취지는 사내유보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기업의 돈을 국내 내수 활성화에 쓰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해당 직원들에게 휴가를 갈 때 소정의 휴가비를 지원해 주면 정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그것 세금 물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과세로 화답을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국내 내수 활성화에 써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부 지원하자 그것하고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임광현 위원님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유보 자금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자는 뜻은 공감을 하는데요.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근로소득자와 기타 사업소득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하게 불거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형태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재정지원 형태의 지원책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세제실장님, 보완해서 보충해서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대충 이야기는 다 주셨는데 제가 임 위원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집행이 제일 어려운 게 걱정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휴가 사업, 온라인몰의 포인트로만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과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40만 원 적립하면 그 돈이 포인트로 적립되고 그 포인트는 여행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임 위원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휴가를 가서 숙박을 했는지를 정부에다가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한 제도를 만들면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런 거야 요즘 다 신용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자료를 이미 국세청이 다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여름휴가 기간에 펜션 가서 하루 1박 해도 30만~40만 원인데 한도가 20만 원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취지는 좋은데 정부 측과 또 박성훈 위원님 등 좀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76페이지,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림으로써 단독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결혼에 따른 어떤 세제상 상대적 불이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단독가구에 비해 주거비용이나 식비 등의 공동 지출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또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제도는 청약 제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혼인에 따른 폐널티 해소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를 일반 단독가구의 두 배로 늘리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결혼 폐널티 없애는 거라 의견 없으실 걸로……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80페이지,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 부양 홀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 요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홀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현실적인 부양의무를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개정안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법안 내용에도 있지만 장애인인 경우에 질병 치료, 요양 때문에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루프홀을 보완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83페이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요건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021년 세법 개정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하반기 장려금 지급 및 정산 시기가 조정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행 총지급액의 35%에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또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현행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이건 21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취지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을 현행 7000만 원 이하에서 1억 2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최대 환급액수인 100만 원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현행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에서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를 확대해서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또 저출생 문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년 또 23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훌륭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그런 세법 개정이 있었다는 점과 또 관련해서 조세지출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23년 세법 개정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아마 윤호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이 부분은 복지제도랄지 그 부분이 아니라 저출생 극복으로 봐야 되는 취지로 좀 더 이 부분을 확대하자는 취지가 아니신가 저희는 짐작을 하는데, 아직 제도 시행 중 초기인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취지로 이게 저출생이나 다른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도 약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제안하신 윤호중 위원님.

○ 윤호중 위원 70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인상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수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훌륭이의 최고금액 지급 기준이 2100만 원인 데 비해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가 많은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맞벌이 가구가 소득이 많더라도 오히려 양육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요. 아이 돌봄을 맡겨야 된다든가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기준은 별로 차이가 없어서 적어도 맞벌이 가구의 최고금액 지급 기준을 2500에서 한 4000까지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보통은 훌륭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다르게 가는데 이건 왜 7000만 원으로 똑같지요?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정훈 소득 상한은 똑같고요.

○ 윤호중 위원 소득 상한 똑같다고 해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까 중간 기준의 캡이 너무 작다는 말씀은 저도 솔직히 많이 고민 안 해 본 영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캡이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 취지에는 저도 동의가 되고요.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좋을지,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기재부가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달라 이런 뜻이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취지는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하겠다, 이런 부대의견 달라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윤호중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호중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부대의견 달아서, 원안 의결 플러스 부대의견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원안 의결 아니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부대의견을 붙여 달라 이거지.

○윤호중 위원 계류.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98페이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녀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조세특례법 100조의30의 해당 규정을 삭제해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유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해서 출산율 제고 등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지급과 자녀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박성훈 의원께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로 제안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자녀장려금 도입할 때부터 중복을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를 설계해 왔었고요. 두텁게 지원하라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원하는 대상이 오히려 면세점 이상을 좀 더 지원하는 모양새가 돼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자는 취지를 고려했었을 때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박성훈 위원님 하실 말씀.....

○박성훈 위원 앞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 제도는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요.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도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미 소득세 산출세액 발생하는 가구도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가구

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만큼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가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보고서에도 있지만 2019년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자녀장려세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하고 자녀장려금 중복 공제 허용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에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제안하신 박성훈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요. 두 제도의 대상이나 취지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도 또 충분이 견해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취지가 같다. 다만 그 적용 요건이나 대상이 약간 다를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자녀세액공제는 어쨌든 소득세 체계 내에서 환급이 불가능한, 기본적으로 모든 세액공제는 다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세점까지 떨어지면 그것으로 혜택이 끝나는 건데 유일하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또 다른 특성이 있지만 근로장려금도 마찬가지고요. 두 장려금의 경우에는 면세점까지 떨어지는 것 가지고는 정책 효과가 반감이 되니까 마이너스 환급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고요.

다만 그 마이너스 환급을 모든 사람한테 다 해 주는 부의 소득세까지 갈 거냐 아니면 EITC나 CTC 방식으로 갈 거냐, 그건 정책 설계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에서 어쨌든 이게 소득세 공제나 이런 체계에서 환급 가능한 영역으로 확대시킨 부분이라고 보면 중복을 배제하는 게 제도의 정합성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정부 측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류해 놓고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2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1대를 처분한 후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양도차익, 즉 판매금액에서 감가상각된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대체 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을 3년간 분할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5년 이내 동일 특례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양도차익이 일시에 발생하는 소득의 결집 효과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함으로써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조속한 교체를 유도하고 또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용 유형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또 이것이 처음 도입되는 특례다 보니까 지금 일몰 기한이 없는데 일몰 기한을 설정해서 시간이 경과한 후

효과를 한번 평가하는 이런 절차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18년 이후 발생분부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특례를 시행 유예, 대상 축소 등을 통해 하고 있었던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업계 수요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고가의 건설장비 1대만 보유해서 대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노후된 기계를 처분할 때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완화하려고 이번 특례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몰 기한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다른 사업용 자산은 해 주지 않는데 왜 건설기계만 해 주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전에 다 잘 이해하고 계신지, 조금 복잡한 내용이 가지고 이 제도의 경과 과정을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아니면 컴퓨터 등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법인이야 당연히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모든 수입과 지출이 다 과세가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서 통상의 경우 5년 내에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하면 그 산 금액이 전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중에서 중고로 팔면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짜리를 사 가지고 1억의 비용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장에서 팔면 한 2000만~30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 2000만~3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차관이 설명드렸듯이 이제 18년부터는 과세를 하겠다. 비용을 5년간 떨어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마지막에 그것을 중고로 처분해서 다시 수익이 생겼다면, 실제로 그 기계를 사서 운용하는 과정에 8000만 원밖에 비용이 안 든 것이지 않습니까, 1억에 사 가지고 2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미 비용은 1억을 다 떨어 먹었으니까 다시 2000만 원은 익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그런 금액들이 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주 고가의 건설장비 1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건설장비는 1억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10억까지 가기도 하고, 건설장비는 비싸지만 또 이런 분들을 그렇게 고소득 사업자로 보기도 힘들고 또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장비를 구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에 걸쳐 가지고 3억짜리 장비는 다 비용을 받았는데 갑자기 중고가격 한 5000만 원, 7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고가격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중고가에 대해서는 일시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몇 년에 한 번씩 누진과세에 의해서 세율이 죽죽 올라가 버립니다.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5년 10년마다 기계를 갈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누적효과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 반발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2년을 유예해 주겠다. 그리고 그전에 산 것은 안 하고 새로 산 것부터만 하겠다. 그리고 시행도 한 2년 내 파시는 것은 그 기간도 빼 드리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종료가 돼 가지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런데 솔직히 5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없겠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이것을 유예해 달라고 다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유예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누진과세가 되더라도 내실 수밖에 없다라고 또 하는 것은 뭔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누진과세라도 피할 수 있게 한 3년에 걸쳐서 내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이자 조금 이익 보고 누진과세 피할 수 있고, 그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업자들하고는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크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합리적인 과세이연 정도, 분합납부 정도는 해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은 이유는 이걸 또 3년 뒤에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건설기계에 대해서 이 방식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한 과세체계의 하나의 틀로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굳이 일몰로 둘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두 가지, 일몰도 없고 건설장비만 하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잘하면 시끄럽겠는데……

이것 하고 나면 또 건설계 수용 안 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업계에서도 유예를 건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한다는 입장도 이해하셨고 또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형평의 문제, 과도한 특혜의 문제 이런 부분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 가지고 설득을 드렸고요. 본인들도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206페이지입니다.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 추징 기준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추징 기준을 현행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20% 이상을 과소신고 또는 과대계상한 경우 추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 또 성실사업자는 20% 이상 과소신고한 경우 추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마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추징 기준과 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기준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성실사업자하고 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추징 기준을 달리 적용해서 성실사업자의 경우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는 성실사업자가 보다 영세하기 때문에 보다 완화된 추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소득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는 점에서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없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좀 전에 전문위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준의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수입 또는 경비를 과소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대계상하는 경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제도를 실제로 심층평가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좀 루프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소 소득 신고한 경우로 기준을 바꿨고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다만 추정 기준을 조금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수입과 경비로 하던 것을 소득으로 바꿨다는 이런 얘기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대로 원안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2건의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각각 3년 또는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런 소득공제 연장을 통해서 일정한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적용기한이 올해가 아니라 2025년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에 평가를 통해서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직 일몰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에,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연장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신영대 위원님, 아직 1년 남았으니까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신영대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21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3건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중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박대출 의원님 안은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40%p 상향하시려는 것이고 박수영 의원님 안은 2024년 1년 동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역시 40%p 상향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현재 소비심리 촉진을 통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마는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또한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2024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상향은 입법

및 시행시기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유인 효과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 입장에서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 정부가 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24년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박수영 의원님 안대로 24년 소비 진작에 기여하신 분들한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세제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오기형 위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오기형 위원** 저는 이런 식의 설명이 여기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했는데, 법 개정 사항인데 나중에 와서 정부 약속의 신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설명은 앞으로는 반복 안…… 어제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입법부가 왜 있습니까? 실제 사전 논의하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건 논거가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협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논거가 되면 안 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유념해 주시고 정책 추진에서 유념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순수하게 세제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참 힘든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안을 올리자고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로, 또 그런데 반대로 많은 근로자들이 정말 의미 있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정말 중요한 제도라는 의미도 있고요. 제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제도고요.

다만 어쨌든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전통시장 아니면 대중교통 또 문화비 등등에 대해서 우대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관님도 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비입니다. 투자나 부동산, 고용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소비인데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참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 그리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부담 경감 이런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중에서도 전통시장이나 증가분 이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중산·서민층,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득공제의 확대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다만 현시점에서 사실상 기간이 이미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 정하는 것하고, 사실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끝난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고 결정해야 될 텐데 필요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소비 진작의 취지가 있으니까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의 간곡한 부탁이고요. 필요하면 또 과거의 사례나 효과들을 고려해서 제도의 수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조정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도를 만들고 미리 행위를 규정하고 뭔가 효과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이루어졌던 걸 사후적으로 하는 게 입법의 영역은 아니다, 그 취지가 필요하다면 재정의 영역으로 푸시라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말씀드려야 될 사안인데 지금 세수결손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풀지 고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내용적으로 관통이 돼야 서로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세법 얘기하는데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신용카드를 쓰는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일부러 방문한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지원해야 된다는 어찌 보면 의무감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건데 대한민국의 몇몇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어떤 정책을 써도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그렇게 많이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용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국민의 이익은 더 큰 것 아닙니까, 이런 신용카드 공제 혜택보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 건데도 사용 안 해요. 그러면 기재부가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통시장 지원 관련해서는 중기부와 함께 협의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지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정책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겁니다. 논쟁이 길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실장님께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 진작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도요 과연 우리 시대의 소비 진작의 한계를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부분이 지금 과한 욕망이나 불필요한 소비가 너무 많다는 게 여러 진단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은 지구의 기후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 관련해

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마냥 소비 진작, 내수 진작을 이유로 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를 위해서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재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혹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먼저 신용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좀 외 램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친구도 만나 보고 기자도 만나 보고 학자들도 만나 보고 여러분들을 만나 보면 기본적으로 세제의 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는 이 제도의 원래 도입 목적이 과표 양성화였기 때문입니다.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써 달라라는 게 제도 취지의 목적이었고 지금은 제도 취지가 충분히 달성이 됐다.

그런 면에서 연간 세수 감면이 한 4조~5조쯤 들어갑니다. 4조~5조 들어가는 부분들을 만약에 이걸 없애 가지고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4조~5조를 가지고 다른 자녀세액공제나 이런 걸 더 늘려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가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는 아니다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과표 양성화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일반적인 하나의 거의 기본적인 틀로서의 공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은 굉장히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 몇 년간은 조금 줄인 게 원래는 한도가 똑같았었는데 고소득층하고 중산층하고 구분해서 한도를 차등을 둔다든지 또 과거에 바꾼 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차등을 둔다든지 몇 가지 조금 보완 장치를 하긴 했었는데 추가적인 제도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의 한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던 참 큰, 기재부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사실 30년 전에는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나바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하자, 제발 소비 좀 그만하자, 소비를 억제하자 해 가지고 신용카드도 억제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환경을 중시하고 뭔가 미래를 위한 그런 소비나 경제정책보다도 당장의 민생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당장의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결국은 적정한 소비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근로자와 기업들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일종의 플라스틱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책으로 도모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체를, 소비를 그냥 아껴서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정책, 바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둘 다 같이 병행돼야 되는 시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도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 전반적으로 저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당초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와는 좀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표 양성화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 얼마만큼 전통시장의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가 보면 특히나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을 만나 보면 이런 부분이라도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위주의 유통망과 경쟁이 어렵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부에서 이러한 다양한 신용카드와 관련되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보시고 좀 더 나은 대안을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간접세라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에서 정책 발표하게 되면 SOP처럼 신용카드 공제 이런 걸로 경기 활성화, 내수 진작 이런 얘기를 죽 해 왔는데 이제는 그걸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때가 됐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십니다.

다만 반대의견 주신 오기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왕 시작한 것 여기까지는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회의 같은 걸 통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템요.

오기형 위원님은 어떠신지요?

○**오기형 위원** 좀 엄격하게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함께 대체로론 다시 한번 하시지요. 이미 다 지난 다음에 과거 걸 하는 게, 입법적으로 푸는 방식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말씀……

○**소위원장 박수영**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생각할 부분이 이런 세법 개정 사항을 연말에만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부도 연초에 만약에 경제정책방향 발표할 경우에는 국회랑 조금 교감을 가지시고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국회도 최대한 정부랑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조세 소위를 연중 상시화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 주는 게 국민들한테 정책 신뢰도, 정부 신뢰도 측면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새로 22대 국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연초부터 협의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오기형 위원님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고 하시니까 일단 보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220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및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건의 개정안이 지금 제안되어 있는데 이 중 신영대 의원님 안은 숙려기간이 안 돼서 사실 소위에는 회부되지 않았지만 참고로 같이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초과하여 소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현행보다 10%p 높은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박대출 의원님 안은 아까 전통시장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2024년 상반기 사용분만을 또 박수영 의원님 안은 2024년 사용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신영대 의원님은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비 진작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 효과를 의도하는 것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똑같은 얘기고, 다만 문제점도 2024년 사용분에 대한 이런 공제율 상향은 또 입법이나 시행시기 문제로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소비증가분 10%를 또 소득공제로 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고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신영대 의원님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 편성하고 최근에 나온 예정처 전망에서도 보면…… 예정처 전망을 말씀드리면, 25년에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물가 안정과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정부도 당시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저희도 좀……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느 방향이 맞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은 앞에 전통시장 사용분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둘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227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3건의 개정안 중 신영대 의원님 안은 아직 회부가 되지 않았지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중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박희승 의원님은 30%에서 50% 또 이재명 의원님 안은 80%, 신영대 의원님 안은 100%로 인상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의원님 안은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의 추가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의 공제율 상향으로 아까 논의하신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의 효과가 서로 상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또 2023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20.9조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도 감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좀 더 제대로 달성하려면 문구를 좀, 계산 산식 같은 걸 다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좀 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항목에 보니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현금영수증·직불카드에 30%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가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특별한 지원이 더 가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일인당 발행되는 금액이 지자체별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자세한 숫자는……

○**신영대 위원** 한마디로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 지역의 지자체 시민들한테 무한대로 주지 않아요. 실제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도가 높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데 결국은 작년 같은 경우도 정부 예산에 안 담겨 와 가지고 국회에서 증액해 가지고 지금 3522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던 것 같은데 이것 갖고는 전국 지자체가 소화가 안 되고요 결국은 자체 지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데, 지자체 자체 재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의 내수 진작 효과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결국은 지역의 선순환 구조, 지역에 돈이 잔류하는 효과를 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세제 지원들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액수가 크지 않다는 말이에요, 개인들한테 10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 이게 아니라 캡을 써워 놔 갖고요 그 이상 발행을 못 해요, 개인들한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에 대해서 별 큰 의미 없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전체 규모가 20.9조라고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23년 발행 규모가 20.9조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개인에게 캡을 써워서 많이 못 간다는 것은 또 무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서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서 쓰고 있는데 월별로 어떤 사이트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한도가 있고요. 1년에 어떤 자치구는 다섯 번 발행하는 곳, 여섯 번 발행하는 곳, 다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 할 때 얼마나 많이 할지를 결정하고요. 그러면 특정 시간에 사이

트를 열면 거기에 전부 다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는 시군구는 조기에 매진이 되고 또 인기가 없는 시군은 한참 뒤까지 팔리기도 하고요. 보통은 50만 원 또는 100만 원 1회 구입 한도가 있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10% 정도 할인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종전에는 10% 있었다가 최근에는 주로 5%로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5%.

그것 때문에 재정 부담이 생기니까 한도가 이렇게 막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써야 된다는 취지로 한도를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도 지자체 부단체장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지방에서, 지자체가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사실상 형평성이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불평등 이런 부분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현금영수증보다 공제율이 높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깡이라는 거지요. 현금 깡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사실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 상공인들을 돋겠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보게 되면 지역도 전통시장이 있고요. 또 일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결국 전체 소상공인을 우대한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보면 오히려 전통시장 소비가 좀 더 위축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 특정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당초의 정책 효과 달성이 불분명한 이런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결제수단별로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보다는 한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정부에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늘리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태호 위원** 그것 왜 늘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실제로 소상공인들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로드 속인 줄 몰라요? 전통시장은 워낙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 보면 전부 다 폐업이에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만 지금 발행하고 그것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태호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 기본적인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전통시장

지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그러나 정말 피해가 큰 길거리의 상가 이쪽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계속 빚만 쥐어 주고 있잖아요, 대출해 주겠다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역상품권이 왜 좋냐?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놓으니까 되게 제한적으로 보여지는 데 실제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일 중요한 정책이에요. 2019년인가 2018년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만들었는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달라는 거였고 또 하나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역상품권의 발행에 대한 정부 지원이 처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그게 26조 원인가 25조 원까지 늘어난 거예요. 정부가 소상공인들 영업을 못 하게 하니까 결국에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게, 또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25조 원까지인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는 거고.

지금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서울에서 지역상품권 제일 많이 발행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강남 3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태호 위원** 강남구예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여력이 제일 좋은 데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오히려 발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소상공인들의 밀집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 관악 경제의 95%가 소상공인 경제예요. 그런데 돈이, 여기는 발행하고 싶어도 자립도가 약하니까 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 간의 불평등,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균등하게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군산을 얘기해 드릴게요, 신영대 위원님 계신데. 군산의 지엠코리아하고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았어요. 완전히 지역경제가 폭망하는 상황이에요. 제일 큰 타격이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장임준 시장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때 2000억인가 발행을 했어요. 그게 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고 그걸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지금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상공인들이지.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역 간의 불균등 현상도 나타나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고 그러면 정부가 그걸 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온누리상품권만 대폭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정부가…… 이게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니까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옹졸한 거예요. 잘 판단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정부도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 효용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부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성격이지 국가사무로 할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비상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보지만 소상공인들은, 어저께 통

계 나온 것 보니까 벌써 100만 명이 폐업 신고를 했어요. 비상 시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상공인에 대해서 타기팅된 전략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정확한 인식이에요.

지역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지요. 충수요라는 관점에서 이것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요. 좋다고, 인정한다 치자. 그러면 지금은 비상 시기고 타기팅된 정책이 필요한 시기거든. 그러면 이런 시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한국은행 총재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거지요, 정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고 계십니다.

○**임광현 위원** 저도 지금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전통시장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에 있어서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전통시장 내 비중은 5.6%고 나머지 한 94%의 소상공인들은 그 외의 지역에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부분 지역의 전통시장은 현대화돼 있어서 상권이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하려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배분을 하려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말고 로드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확한 현상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잘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윤호중 위원님도 아까부터 손 드셨습니다.

○**윤호중 위원** 국감에서부터 수도 없이 강조를 해 와서, 온누리상품권만 가지고 소상공인 대책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새출발이라든가 아니면 판로지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정부가 하나하나 핀셋으로 집어 내서 지원해서 충족이 될 만큼 정부 플러스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실제로 지금의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가 좀 좋아질 때 까지 괜찮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것은 사실 지역상품권 발행 이외에 다른 해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두 가지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계 소비지출이 줄어들면서 입는 타격과 그다음에 소비의 양태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입는 타격, 양쪽의 타격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그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런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종욱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차관이 지자체 업무냐, 국가사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국가 예산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세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법상 소득공제율을 어디까지 할 거냐, 현재 30%인데 그 이상 확대할 거냐 이 문제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한데 지금 국가가 문화비 30%,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높은율을 조정할 거냐 하면 기준에 있던 전통시장에 대한 공제율도 조정해야 되고 전반적인 체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어차피 입장들의 차이가 오랫동안 노정된 거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얘기드리고 싶어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을 타기팅해서 만든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행된 만큼 다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냈느냐 하면 골목형 상점가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골목형 상점가가 뭔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골목형 상점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마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상점 수랄지 유사 업종 수나 이런 것에 굉장히 제한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점가 지정이 안 돼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안 되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결국 전통시장밖에 못 썼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또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완화시켜 놨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 하면요 웬만한 상가들이 이어 있는 곳들은 다 상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어디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상권에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지역 같은 경우들은 이런 소상공인이 다 망해 갓고요 가게 문 닫은 데가 많아요, 폐업한 데가. 그런 데들은 상점가 지정의 최소한의 기준도 못 채운 거예요.

그러면 상점가 지정을 도대체 어디를 많이 할 거냐? 대부분 수도권일 겁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어디서 써요? 그것은 전국에, 특정한 지역에서 제한을 안 받으니까 대부분 그 구매 수요가 수도권에 있을 거고 그 구매의 사용처가 대부분 수도권 아닐까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면밀히 중기부하고 협의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이, 지금 현재 지역화폐 발행 부분이 정부가 작년에 지원해 준 것 갖고는요, 우리가 국회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증액시켜 놨는데 그게 굉장히 좀…… 지역에서 발행할 때 그것 갖고는 턱도 없어요. 결국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거예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것만큼, 그렇게 투입된 것에 대해서 그 개인당 액수라는 게 결국은 한도가 한 사람당 1년에 기껏해야 100만 원 정도밖에 구매를 못 합니다. 이런 정도는 지역에서 돌게 놔두자라는 게 이 세액공제의 취지니까 이것 자체를……

물론 오늘 결론 못 내릴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결론 못 내리겠지만 이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요, 팬찮습니다. 법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금 하시는 논쟁 말고, 어쨌든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다…… 제가 세제만 관련해서 딱 하나만 말씀드려야 돼 가지고……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 또 지역화폐의 발행 여부 등등은 별개…… 저는 순수하게 세제실장으로서 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전통시장 상품권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뭐가 합리적이냐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초기에는 순수하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동일하게 20% 공제를 했습니다. 20% 공제를 하다가 당시에 과소비의 문제 또 신용불량자 문제 등등이 대두되면서 아무래도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돈을 쓰는 거니까 외상으로 쓰다가 결국은 많은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에 걸리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직불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용카드는 15%로 줄이고 그리고 직불하고 현금영수증은 30%로 옮겨서 그 두 가지에 차등을 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새롭게 정책이 죽죽 들어온 게 그냥 똑같은 결제수단뿐만 아니고 당시 고유가·고환율 시절에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장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그다음 문화비라는, 특정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좀 장려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좀 더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가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나 현금이나 사실상 현금이냐라는 구분만이 가능하지 거기에서 또 이게 좋은 직불성이다…… 결국은 다 직불이거든요. 지역화폐도 직불이고 전통시장 상품권도 직불입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다 똑같이 30%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비를 하는데—물론 그게 다른 장소일 수도 있고 다른 위치일 수도 있지만—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제수단을 쓰느냐에 따라서 직불과 신용이 아닌, 그냥 직불카드 내에서 이 직불은 더 좋고 저 직불은 덜 좋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품권은 30%를 해 줘야 되지만, 백화점 상품권은 30%를 해 줘야 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80%를 해 줘야 된다, 지역사랑상품권만이 충분히…… 우리 정부 정책과 방향이 다른 결제수단은 다 죽이자,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역사랑상품권만을 쓰게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다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고 세제 지원하고는 결을 달리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판단을 해 주시되 세제에서는 그렇게 운용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괜히 논쟁을 만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세제실장이 하신 말씀 중에 도를 넘은 것 같은데……

○정태호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세제실장님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결제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그중에서 길거리 상가들, 그것은 골목형 상점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 등등으로부터 다 포위가 돼 있는 거예요. 매출이 안 늘어. 아예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쪽의 매출을 어떻게 늘려 줄 건가의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 발행하면 그 안에 사는 소상공인들만을 대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는 이마트도 없어. 관악구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소비하느냐, 구로구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인터넷 직구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 가는 거예요. 죽어 가는데 정부는 대출만 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제수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자체가 동네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다라는 것도 저 동의할 수 있어요. 비상시기에 비상한 타깃팅된 대책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수단으로 보면 안 돼요.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나 심지어 본회의에서도 논의를 했던 사항들인데 제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마는 계속해 봐야 논쟁이 또 계속될 뿐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 좀 짚을 게 있어서……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요.

천하람 위원님이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고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것 어차피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지금 보면 공제율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지역화폐를 살 때 평시에는 보통 5%, 명절 앞 두고는 한 10% 정도 할인 혜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 90만 원 정도에 100만 원어치를 샀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 사용분에 대해서 높은 공제 혜택을 주게 되면 사실상 거의 전액이거나 심지어는 전액을 뛰어넘어서 공제를 받는 문제가 일단 테크니컬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추가공제 한도 신설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사용분의 80%를 공제해 주고 또 추가공제 100만 원 신설하면 엄청난 지원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계산을 저희가 했지만 지금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리고 특히 추가공제 한도 신설하는 경우에는 중산층에 비해 가지고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과표 구간에 따라서 혜택이 굉장히 올라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대략적인 논의를

도 중요하지만 좀 디테일을 짚으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구입액을 기준으로, 할인받기 전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뭔가 좀 대안이 있지 않으면 높은 공제액을 주는 것은 조금 과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우리 법안소위에 맞는 디테일한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제 생각에는 원내대표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245페이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유아놀이 시설 사용분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영유아놀이시설 사용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해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유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및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마는 이런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제한도를 상향했을 경우 그 효과가 반드시 영유아놀이시설 사용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반적 소비지출에 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신영대 위원께 아까 전반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과 정부의 방향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다시 반복은 안 하겠고요.

하나 좀, 만약에 이게 도입된다 하더라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진짜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대략 파악해 보면 8만 개가 넘고 종류도 목욕장업에 위치된 부분,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부분 해서 이게 과연 딱 브레이크다운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을는지도 솔직히 자신이 없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첫 번째, 지역의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를 데리고 놀이시설이 있는 곳으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부담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목욕탕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 식당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까지 확장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과도한 우려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요. 일·가정 양립인데 일·가정 양립 중의 하나는 결국 아이와 함께 보내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이게 과도하게 지출이 많아지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아이들과 함께…… 교육비 부담, 양육 부담 이런 비용 자체를 그래도 좀 절감 시켜 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에도 어쨌든 기여를 할 거라고

봐요. 우리 아기랑 갔더니 이것도 나중에 연말에 세액공제 받더라 이런 것처럼 저는 이게 금액이 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대상 자체가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점점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더 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롯데월드를 갔다 이러면 이건 문화비 아닙니까? 문화비로는 카운트가 안 됩니까? 문화비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현재 문화비는 도서관, 박물관, 연극, 영화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어린이놀이시설을 거기다가 포함시켜 주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신영대 위원** 지금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게, 과거에는 롯데월드 하나면 끝났는데 지금은 동네마다 키즈카페랄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아이들은 원하고 부모는 부담이 돼서 어쨌든 안 데리고 가는데 옆집 아이 갔다 왔다고 가자고 하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까 차관님 말씀드린 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장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면…… 어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 수준의 대상시설이 포함돼 버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넓게 시작하면……

신영대 의원님의 구체적인 법안을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장 넓은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대상이 되고 관리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게 그걸 다 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몇 가지 줄여 나가면 가능한 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대상이 되는 게 롯데월드 또 에버랜드 이런 것들 집어넣고 그다음에 키즈카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롯데월드, 에버랜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장료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또 음식도 사고 기념품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음식료까지 해 줄 거냐, 기념품까지 해 줄 거냐, 입장료만 해 줄 거냐…… 당연히 입장료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생각이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음식료, 입장료 이런 것들을 후불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시설을 어디까지 끊을지, 거기의 어느 정도까지, 시설료까지 해 줄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도 때때로는…… 이번에 또 체육시설로 넓혀 오고 했지만 최대한, 세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 또 필요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고 하니까, 지금 문화비 들어가 있으니까 어린이집도 넣고 체육시설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하는 것은…… 최대한 현행 수준

에서 좁혀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 세제를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신영대 위원 신용카드가 됐든 어쨌든 세액 감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월급쟁이, 봉급자들의 소득을, 고소득자를 빼놓고 중위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소득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가능하면 유지되게 도와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들 세대 또는 출생이 필요한 부모들 이런 분을 어떻게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처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세제 혜택이 논의돼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넘어가서 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과도하게, 예를 들면 전통시장의 사용분에 대해서 높여 주자? 저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게 하자 그리고 충산충을 두텁게 만들자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이랄지 세액공제에 대해 필요하면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다. 이게 결국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중에 세수원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된다는 측면이 좀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윤호중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호중 위원 지금 영유아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영유아놀이시설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정, 분류 또는 안전기준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대상 시설을…… 또 거기에서 열거하기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등등 시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이렇게 쭉 해당 법률에서, 각종 규제를 하는 법률들에서 거기에 아동시설을 지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또 큰 모범이 하나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윤호중 위원 행안부의 통계가 그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집계를 한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개념 규정도 안 되어 있으면서 이 논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모든 8만 개의 시설들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형 놀이시설이다 이러면 그런 데 아이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영유아놀이시설 사용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요.

○윤호중 위원 아니, 어렵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만약에 한다면 제가 지금 열핏 드는 생각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겠는데 지금 열핏 드는 생각은 한다면 영유아니까 예를 들어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그 가정이 쓴 돈은 전부 다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8세 자녀와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수, 머릿수의 비율만큼 쓴 금액을 해 준다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윤호중 위원**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에 갔는데 애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키즈카페를 어른들 한 10명이 아이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제한 것을 전부다 세제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업무 대상이 아니다, 쉽지 않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발라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고를 드려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보고는 못 드리겠고요. ‘이런이런 문제점을 도저히 발라낼 수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영대 위원** 제가 알아들을게요.

여기에 8만 2520개의 현황을 이 자료에 넣어 갖고 오셨어요. 이것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 법안 발의의 취지를 모르지 않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큰 틀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저희들이……

○**신영대 위원** 법안 발의의 취지가 뭔지는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요즘 과거처럼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키즈카페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실내 클라이밍장 가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많아졌는데 과거에는 지출 안 했던 아이들을 위한 비용 지출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한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신영대 위원** 그런데 취지를 알고 계시면 여기에다가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고 표현하시면 이것 잘못된 모습 아닌가요?

제가 고민하는 게 예를 들면 학원을 고민하고 하천에 있는 놀이시설 얘기하고 목욕탕 안에 있는, 엄마랑 함께 가는 아이들 잠깐 놀이하는 목욕탕을 얘기하고 도로휴게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신영대 위원** 이런 행안부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제안하면……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이 자료는 전문위원이 만든 것 아니에요?

○**신영대 위원** 아니, 어쨌든……

○**전문위원 이정은** 저희가 넣었는데요.

○**신영대 위원** 법안 취지에 대해서 어긋난 거지요, 완전히.

○**전문위원 이정은** 그런 의도로 넣은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다 하자는 취지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이걸 정하도록 해서 이 중에서도 뭘 대통령령으로 정할지 몰라서 한번 보시라고 넣은 겁니다. 이게 다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

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안에 롯데월드 같은 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영대 위원 없지요, 여기에는.

○소위원장 박수영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없는 것 같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놀이제공영업소에 들어간답니다, 학교 밑의 놀이제공영업소.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이건 많은 시간을 소비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개념 정의나 규정 또는 개념에 포섭하는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끼리 이것을 논의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 신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대형놀이시설 또는 테마파크 또 키즈카페 이런 걸 아마 포인트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는 개념 정의나 법규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이후에 이런 부분을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안은 신영대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가 너무 좋은 거라서 저희가 상당 시간을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254페이지,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산 소득공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고 공제 한도를 1인당 한도의 두 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문언이 약간 불명확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 중 한 명의 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부 합산 소비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 두 명의 급여액 합계액의 25%를 넘는 합산 소비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부부 중 한 명의 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부 합산 소비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줘서 소득공제 혜택을 좀 확대하자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취지로 해석이 된다면 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적어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좋은 취지긴 합니다만 현재 개인 단위 소득세 과세체계와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이런 제도를 도입 안 해도 부부 중 한 명의 신용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현재도 똑같은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만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런 불편을 조금 더 해소하자는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모호해서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임광현 의원님 제안하신 취지를 저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큰 숙제를 주셔서……

좀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개인 단위 소득세 과세체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구 단위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작업 자체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조세연에서 한번 조사했던 것에 따르면 근소세의 한 59%, 종소세의 한 40%가 감소를 해서, 아마 임광현 의원님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실 걸로 저희 예상을 합니다만 21년 기준으로 약 34조 원 세수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임광현 의원님이 어떤 취지로 제안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맞벌이 부부들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할 텐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누구 카드를 쓸지 또는 현금영수증을 쓸 때 누구 번호로 받을지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카드 못 갖고 다니고 배우자 걸로 하는 게 유리하니까 배우자 카드 들고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와서 소비하는데 자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고 좀 찢瘁하지만 배우자 이름으로 받고 왜 이런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가정을 위해 쓰는 거니까 신용카드 공제에 있어서 쓴 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매우 심플하고 이미 하고 있는 행태를 좀 합법화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해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늘 그렇듯이 취지는 아주 좋으신데……

세제실장님, 현실적으로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마 임 위원님도 위낙 세제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가구 단위 조세체계와 첫 부부 합산 단위로 가는 단계고요. 그런데 임 위원님의 취지도 이것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가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건 또 별개의 문제고 또 N분의 N승제도 별개의 문제고, 그건 또 다른 정책의 문제고 이것에 한해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료비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치료받으려 가 가지고 배우자가 치료받은 걸로 해 주세요,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물론 교육비까지는 조금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신용카드는 현실적으로 부부가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을 인정해서 아예 세법에 넣자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 취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어쨌든 세제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첫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뭔가를 시작한다. 더군다나 그것도 부부 합산을 했으면 소득도 합산을 해야 되는데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이라는 이유로 뭔가 체계의 예외를 두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취지는 매우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 기재부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및 가입 대상 확대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특히 이강일 의원안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의 상향 조정 또는 폐지는 국민의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에 다다른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도 상향의 실질적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또 투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 효과에도 불확실한 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ISA 가입은 일반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또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뒤에서 국내 투자형 ISA도 다시 논의를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 ISA 도입 이후 큰 조정이 없었던 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서민·농어민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ISA 도입 이후 납입·비과세는 동일하게 유지되었고요. 그런 부분 고려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확대를 해서 전체 국민 자산 구성이 조금 더 자본시장 쪽으로 오고자 하는 희망을 담아서 저희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ISA 확대, 자산 형성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잠정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국내 투자형 ISA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고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운용자산으로 하는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즉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한편, 이 국내 투자형 ISA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해 비과세 혜택 대신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액 자산가의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ISA 가입은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저율 분리과세 적용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저희가 ISA 부분을 확대하면서 좀 더 지금

ISA가, 정확한 통계는 아마 세제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활성화돼 있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금융종합과세자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풀을 넓히되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랄지 배당이랄지 고소득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내 자본시장, 국내 주식투자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 리스크가 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자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까지도 협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고액자산가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가령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리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금 전반적으로는 ISA라는 취지가 개인자산종합계좌듯이 가급적이면 금융상품들은 좀 단순화시키고 모든 금융상품에 총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한 3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이 운용되는 그런 ISA를 좀 강화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영국, 일본, 여러 나라들이 다양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세계상의 어떤 특성 또 우리 자본시장 또 여러 가지 수익률 등등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 ISA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ISA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도 주로 예금이나 채권 또 일부는 해외 주식까지, 직접적인 해외 주식은 안 되지만 해외 주식에 관련된 ETF, 국내 상장 ETF까지 같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당초의 자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나름 작동은 하고 있는데 자산 형성 측면에서 며무를 게 아니고 우리 자본시장 발전에 좀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만들어 온 것이 자본시장 형성에만 순수하게 기여할 수 있는, 오로지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입 한도나 비과세 한도를 좀 더 늘려 줘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만 투자하되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종합과세자도 들어와야지,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니까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도 9% 또는 0%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일반 투자자하고 똑같은 14% 정도만 내시면 주식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아까 의원입법안에 보면 일반 ISA도 종합과세자로 넣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제실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면서 거기까지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국회에서도 동의받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게 국내 주식형 ISA,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자도 과감하게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품 간의 이동이라는 문제 아니면 수익률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 중심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오기형 위원님.

○ 오기형 위원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방금 세제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제안했던 금투세 자체도 시행 못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여전히 세제의 가는 방향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ISA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실제 ISA 제도 자체가 일반 서민·중산층의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를 좀 보장하고 또 사회적인 상승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떠나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조세제도가 좀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딱 막힌 상태에서 덜컥 이 이야기만 하면,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분명히 정부 설명을 들어 보면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고액 금융소득과 세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국내 증시에 또는 금융시장에 효과가 있을지, 유입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자료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정훈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제도다 보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들어와서 할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과세라는 게, 사실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게 모든 나라에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14%, 일반인들은 2000만 원 이하까지 14% 분리과세고 그다음에 종합과세가 되면 45%까지 올라가니까 세율 차이가 31%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득세율 자체가 지방세 포함하면 49.5니까 낮은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와 초과자에 대한 세율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종합과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14% 분리과세 또는 20% 분리과세만 해 줘도 나름의 유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면 일단 다른 데는 도망 못 가고 오로지 국내 주식만 해야 되고 일정 기간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꼭 한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장기 투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고요.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그 지적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세제를 운용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정 이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납입 한도나 이런 걸 좀 줄여서라도 한번 물꼬를 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발언 없으시면……

정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오기형 위원님 하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금투세하고 연관돼 있어요. 금투세를 통해서 주식에서의, 주식 투자를 통한 이익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서민들한테는

대신 ISA를 통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큰손들이 세금도 안 내고 또 ISA에 가 가지고 특혜를 누리고…… 이 ISA가 서민들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원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서민들보다는 오히려 금융소득을 내는 사람들한테 더 큰 기회를 준다라는 게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안 맞고, 그러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도입 취지는……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변이라고 아마 또 지적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요 기반이 넓어지면 전체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니까요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이번에 금투세 논쟁을 봤듯이, 금투세 도입 안 하면 주식시장 좋아진다면서요? 더 떨어졌잖아요. 금투세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제일 큰 문제는 거버넌스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상장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판단에 제일 큰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긴 건데, 자꾸 엉뚱한 데서 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도 목적에 안 맞게 운용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조금……

세제실장의 공식적 얘기와 좀 다르지만 오기형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말씀과 조금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출발점으로 이 국내 투자형 ISA를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금투세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됐을 경우에 지금 큰손들이 어느 정도는 약간 룸을 만들어서 ISA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받으면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셨서,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아서…… 뒤에 밸류업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배구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배구조 중요한 문제인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자본시장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있느냐라는 분석을 해 봤던 결과로 제일 커던 게 주주환원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요즘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이 한 36%, 기업 지배구조 영향은 한 7%, 회계 투명성은 한 4%, 거시경제 영향은 13%고 그래서 기업과 거시경제 영향 부분이 오히려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정부가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팬찮다고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마지막으로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그렇지 않아도 밸류업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밸류업이 나오는 내용의 요지가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투자자, 즉 일 반주주 입장에서 경영 방침들을 정할 것, 배당 등의 다양한 조치를 좀 할 것, 그런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지배구조가 후진적이어서 실제 이상하게 곶감 빼먹기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본 밸류업의 핵심으로 십여 년 동안 죽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

데 대한민국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특히 금융위든 기재부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의 알짜는 빼지고 맨 세금 감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느냐……

주식시장을 자본시장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것에 대한 그 취지 자체를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느냐? 실제 그렇지 않고 이번 기회에 무슨 민원 한 번 해결하자는 식으로 해서 세제실이나 기재부가 그런 창구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제 문제만 갖고 접근하는 방식이 꼭 그런 모습이다, 현재 보이는 모습이. 지금 현재 오히려 지배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초점은 잠재성장률 보다 더 성장하는 한국 시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OECD 평균보다 더 성장하는 한국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 점에 대한 구조개혁이 제일 큰 것이고 이 세법 문제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제는. 미국 시장이 더 경제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끽감 빼먹기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배구조 개혁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연초에는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이 이야기를 하면, 이거 안 하면 자본시장 활성화 반대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프레임이나 짜고, 그래 갖고 어떻게 진정성 있게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우리 사회의 개선, 진보 내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해를 산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된다. 차라리 야당보고 우리 사회에서 구조개혁하는 데 적극 협력해라라고 압박을 해야, 책임감 있게 같이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별개로 상법 등의 구조개혁 문제, 지배구조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의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의 경영진을 신뢰한다, 지금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는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초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보류해서 차차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3권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296페이지,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이익의 주주환원 유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개인 주주가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또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분리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기업 배당을 촉진해서 가계소득 및 소비를 증가시키고 또 기업 가치를 제고하여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이 배당 확대 및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정책 경로상 불확실성이 있고 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기존의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오기형 위원님께서 정부가 밸류업을 세제만으로 하고 있다라고 오해했다면 정부가 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러 다른 부문에서도 소액주주 보호랄지 여러 부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추가의 한 절반 정도는 기업 자체의 수익성, 성장성 그리고 거시경제가 얼마나 잘되느냐에 달려 있고, 나머지 주주환원이란 기업 지배구조 같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 유념해서 상의드릴 일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올해 초 연구한 바에 따르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제일 많이 꼽고 있는 게 나름 통계적으로 분석한 바로는 전체의 한 37% 가 주주환원 부족을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번에 배당과 범인세에 대해서 특례를 마련한 부분이고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그 정도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세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일관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지점은 지금 3년 연속 국세 감소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그 속에서 감세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토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이 전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찾아 가는 문제기 때문에 민주당 정책이 무조건 옳고 국민의힘 정책이 틀리다, 정부 정책이 틀리고 민주당 정책이 옳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주장 속에서도 나름 시각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 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 주제는 지금 세수 감소 문제가, 실제 여러 가지 쌓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특정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서 뭔가 좀 더 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매개로 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럴 때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밸류업의 가장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감세정책에서 대표적으로 바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상속세 문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나라

라 투자의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설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실증 자료 없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2023년도, 2022년도 법인세,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한 이십 몇조인가 삼성에서 해외로부터 받은 게 있고 실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삼조, 3조 가까이인가 세수가 줄었고, 그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입증과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한 행태를 또 하는 거거든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업상속공제 내지는 세습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양보해야 되고 타협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저희가 주장하는 게 100% 옳다 이렇게 강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서로가 사회적인 논증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특별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동의와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설득 없이 세제실에서, 기재부에서 안 나왔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왜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왜 이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설득하지 않으면 논의 대상에서 빼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님.

○ 윤호중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으나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증명이 됐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2014년도인가요, 최경환 부총리 있을 때 배당소득 중대세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한 1년 반인가 2년 실시해 보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때 다행히 그냥 없어졌던 제도인데 이걸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시 들고 왔어요.

밸류업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밸류업 하는 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정도의 효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세를 통해서 조세지출을 늘려야 되는 이런 정도의 일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비교형량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것 채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 정태호 위원 저는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취지인데요. 2014년도에 도입을 해 가지고 3년 시행하고 일몰 연장 없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인가 거기서 그것에 대해 평가한 걸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요.

첫 번째는 배당이 늘어나는 특징이 지배주주의 비율이 높은 회사 그다음에 배당액이 늘어난 경우는 회사 이익금이, 그러니까 사업이 잘돼 가지고 이익이 많이 늘어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최종 결론은 결국은 지배주주한테 이익이 되고 그리고 원인은 사업을 잘한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수만 감소하고 배당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되더라,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의 결론이었어요. 물론 그 연구 결과는 사후에 있었던 거지만 일몰 연장이 안 된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됐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뭔가 근거를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난번처럼 결국 지배주주한테 귀착되는 결과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수는 줄어들고 부자만 더 부를 늘려 주는 그런 꼴이 될 거란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앞에서 지난 14년 배당소득 증대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제도하고 그 당시 제도의 차이를 좀 찾아보니까요 당시에는 적용 대상을 주주에서 이번에는 기업까지, 결국은 주식시장의 수요자에서 공급자까지 확대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요건을 좀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결산배당만을 대상으로 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달리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정책 실효성을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큰 의미에서 보면 동 제도의 도입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제도 설계와 관련해서,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과 관련해서는 개인주주가 증권사에 주식을 대여해 주는, 그러니까 대여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배당소득은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대로 보유할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아서 세율이 9%라고 하면 이것을 대여해 줄 경우에는 특례 미적용으로 해서 14%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대여 서비스 가입 계좌 수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157만 계좌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단순 보유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설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이 구체적인 설명 주셨는데 그것은 기재부에서 반영을 해서 검토하시고.

우선 야당 위원님들 모두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차츰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야당 위원님이 요구하신 근거자료, 실제로 배당을 늘리고 주식시장으로 해서 중산층을 확대시키느냐 이런 질의들이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아까 정태호 위원님 조세연 분석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다만 거기에서 또 마지막 내용에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도가 너무 엄격한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3년 한국경제 학회에서, 저희들이 부탁드린 건 아니고 본인들이 아마 직접 한 것 같은데 그 논문에서는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그 자료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훈 위원 말씀대로 당시 엄격한 요건을 저희들이 최대한 완화를 시켜서, 당시에는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배당증가율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하고 대상도 넓혀서 좀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일단 보류하고 차후에 재논의를 해야 될 결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여기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은 18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9시부터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른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18시까지만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각자 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종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IV-1 안건 맞지요?

○전문위원 이정은 예.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범인세 분야, 소위 자료 IV-1권의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내용은 연구개발의 정의를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체계의 개발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재정의하여 연구개발 정의에 체계성과 창의성을 추가함으로써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또 연구개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건은 국세청에서 연구개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문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다소 기술적인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천하람 의원이 제안하신 안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지나가고 천하람 위원님 오신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7페이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은 10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면, 이러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시려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개정안들은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창업 초기 지원을 계속할 수 있고 또

일자리창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세수감소 효과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6년 1477억, 2029년 5908억 원 등으로 예상되는 등 조세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에 대하여 엄태영 의원님 안 등과 같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2018년 이런 우대 도입 당시 목표했던 서비스업 창업이 충분히 증가하였다는 정부 측의 평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 정부안은 창업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창업 여건, 업종 간 형평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창업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감면율은 하향해서 지방균형발전, 담세력에 따른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두 번째는 특정 서비스업에 대해서 우대감면율의 적용기한을 종료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지만 창업 건수가 좀 늘기도 했지만 유튜버랄지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을 악용해서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용 증가 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특정 기업에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감면 한도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신성장서비스업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 물류 산업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 엔지니어링 산업, 보안시스템, 직업기술학원 이런 것들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이 이런 업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 제도가 원래 제조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제일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기간산업이다 보니까 제조업이 시작했다가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를 했고요. 경제발전 과정에서 신성장서비스, 특히 두뇌나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업종들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신성장서비스는 조금 우대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지금은 전체 감면액 중에서 보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도 그렇고 감면액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제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보다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협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는 다 되신 건가요? 여기에서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개별 협회하고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부처 협의는 다 마쳤고. 당연히 부처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으면 더 좋다라는 의견은 있었지만 이 부처가 또 다수의 부처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다 거쳐 가지고 합의가 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것 설명하시면서 공유오피스 문제, 지난 국감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 하셨던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했는데 약간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실제 사업장하고 달리 주소만 거기다 갖다 놓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유튜버나 BJ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인천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일단은 감면율을 줄였고요. 감면율을 줄여서 그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특혜가 일단 줄어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유튜버하고 BJ를 아예 제외할 거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현행 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집행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이 되려면 인적·물적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용도 있으며 시설도 갖추고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이 되고요. 그냥 혼자서 자기가 단독으로 하는 1인 BJ 같은 경우에는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기타 자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 BJ들은 기본적으로 현재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받았다면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남은 것들은 그래도 몇 명을 고용해 가지고 좀 크게 하는 BJ들, 그 부분들을 아예 제외를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거기에는 건전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건전과 불건전이 병존하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세법에서 건전, 불건전 나눠 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뺄 거냐 놔둘 거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재 안을 가져온 것은 일단 줄이는 정도로만 가 보자라는 안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예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종욱 위원** 하여튼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국세청과 같이 해서 단속도 강화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이것을 별도의 실태조사를 한번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업종코드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어디에다 냈었는지 숫자라든가 분포도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혹시 일부 사례가 일반화가 돼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의의 피해라는 것은 완전히 제외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줄였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광현 위원** 줄이거나 완전히 제외하거나. 저도 유튜브 방송하는 데 가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데 가 보면 정말로 방송국 스튜디오처럼 제대로 하고서 콘텐츠 제작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지원을 해 주는 게 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은 필요하다,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구분돼 있는데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 그다음 기타 수도권 그다음 지방 이렇게 구분해서 3단계로 하면 지원은 해 주되 어쨌든 영업 환경이 그나마 좀 더 나은 수도권 지역은 감면이 조금 줄어드니까 합리적인 지원 수준 아니냐라는 차원이고요.

그 줄어드는 부분은 BJ뿐만 아니고 나머지 모든 업종에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차등을 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특정 업종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것은 좀 더 운영해 보고 한번 판단해 보려는 취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실태 조사 부분은 저희들 국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잘 점검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0페이지, 관련해서 감면율 정비 및 감면 한도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수도권의 경우는 축소하고 또 고용증대 추가 감면율을 상향하는 한편 감면 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또 창업중소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인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좀 전에 앞서서 한꺼번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 과밀억제권역 문제.

○윤호중 위원 이왕 여기 왔으니까……

전문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면 ‘개정세수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조세 지출 규모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전문위원 이정은 예, 그렇습니다. 세수 감소가 그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윤호중 위원 이게 올해까지의 세수와 비교해서는 사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정은 아, 저걸 빼니까요?

○윤호중 위원 예. 그러니까 감면율도 조정이 되고, 감면율도 낮춰지고 그다음에 신성장서비스업은 감면 한도도 설정하게 되니까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올해하고 비교하면?

○전문위원 이정은 올해하고 비교하면 감면율이, 아마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전문위원 이정은 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적용……

○윤호중 위원 이렇게 되는데 감면이 된 올해보다는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전문위원 이정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정처는 항상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현행 세법 기준이면 내년부터는 안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해 주니까 이걸 연장을 하면

이것은 통째로 7000억 감세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윤호중 위원** 감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게 평가하면 그것도 객관적으로 맞는 평가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세수가 달라지느냐 그것을 저희들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세입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일부 세수증이 맞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렇게 2개를 다 비교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나 항도 아까 논의를 다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안 및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정은**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조세 유인 효과 면에서 가맹점 등록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자 유입을 통해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 혜택이 없어도 등록할 유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 또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입 업체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 소재지에 따라 가맹점 등록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의 차이가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것은 앞서 말씀 나눴던 지역사랑상품권 논의랑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는 사람, 소비자는 할인해 주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가맹점까지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가맹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걸 다 10% 세액 감면해 주자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참고로, 제가 이 제도에 대한 찬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위원님들 판단하시는 데 참고사항으로 지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투자나 고용 이런 것들이 매년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존재만으로 일정 부분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그 대상에 통상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도소매나 음식점들이 많고요, 그런 도소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소기업까지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문제까지 다시 논의해야 할까요?

○**이종욱 위원** 이것은 조금.....

○**소위원장 박수영** 가맹점에 대해서까지 세액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그러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10% 깎일 텐데, 법인세 10% 깎자는 얘기가 되는데.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윤호중 위원 이것 아마 황명선 의원이 계시면…… 아, 우리 위원회 아닌가요?

어떻든 왜 이 안을 내놨는지는 알겠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액에 대한 10%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세 전체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법인세 전체 또는 소득세 전체에 대한 겁니다.

○윤호중 위원 이것은 거의 전 지역인데.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10% 깎으면 법인세 완전히 박살 나겠는데.

○정태호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전체를 놓고 논의하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럴까요?

그리면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의금산입 이연의 과세특례 대상을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출연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이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맞춰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은 어차피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문 정리와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기술적인 문제라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은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잠정 의결하고.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이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충원 및 취업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시행령에서 기업이 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신영대 위원님 계시면 제가 말씀을 좀 더 들어 봐야 될 텐데 정부 판단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는 새로 법안을

개정할, 신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신영대 위원님 오시면 말씀을 좀 더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했다가 신영대 위원님 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천하람 위원님 도착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천하람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발의하신 안건, 4쪽입니다. 4쪽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인데 아직까지 회부는 안 됐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중소기업의 감사보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10%로 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회계감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감사보수의 수준이 보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큰 부담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 있고, 또 회계감사 비용은 어찌면 기업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탁책임 이행이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 아마 제도 변화에 대해서, 외부감사제도의 변화에 따른 일종의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 천하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그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외부감사제도 자체를 바꿔야 될 부분이지,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서 법인의 의무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제를 통해서 지원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정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이게 손비로 계상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손비로는 당연히 되는 거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이런 것들도, 인건비는 당연히 손비가 되는데 그 손비 플러스알파로 좀 더 지원을 하는 몇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천하람 의원님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방금 차관님 답변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신외감법이라고 하는, 외감이 강화가 되면서 이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오히려 신외감법 자체를 조금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최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방금 세제실장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기업의 회계기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것이고 기준에 있었던 당연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부담을 사실 조금 강화시키면서 약간 연구개발 행위, R&D 행위와 비슷하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누리는 그런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최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라도 부담을 완화하고 강화된 외부감사의 효능이 사회 전체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자산 총액 500억 이상이 대상인데 천하람 위원님은 중소기업은 조금 세액공제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결국 자산 500억 또는 매출 500억 이런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업종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 1500억까지가 중소기업인데요. 그러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500억에서 1500억 사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결과가 되고요.

조세소위에 올라온 모든 과제들이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 이런저런 나름의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필요한 측면은 다 인정되지만 그 좋은 취지만 가지고 세금을 하나하나 다 깎아 주다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요. 저희들은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고용 증대라든지 투자, 성과 공유 등등 이런 쪽에 한정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세제 운영 당국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외감법 제정 직후에는 상당히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편향될지 모르겠는데요. 금융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좀 정착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이것 연구를 계속 시킬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천하람 위원** 어쨌든 지금 상장사 1인의 평균 감사보수를 보니까 18년도에 1억 4000에서 22년도에 2억 8000 정도로 사실 많이 늘어나긴 했고 아마 그때 늘어난 것에서 지금 안정화가 됐다라는 취지일 텐데, 그래서 그냥 민원을 방치하고 가면 외감을 약화시키자는 얘기만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조금 계속 지속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금융위랑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이번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번입니까?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36페이지인데요.

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정은 그러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인수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취득기간 및 적용시한 연장을 통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아울러 세액공제율 하향을 통해서 이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 등 취득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어 조세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이러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인수에 대한 조세 지원 혜택이 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첫 번째, 주식 등 취득기간의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23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 취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벤처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대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건을 완화한 대신에 공제율은 합리화해서 아마 수혜기업은 늘어나지만 조세지출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지금 사실 기준 10%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인데 이걸 또 5%로 줄이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아무리 대상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어쨌든 직접 R&D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더 많은 공제 혜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M&A도 기술 획득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준의 10% 공제율을 5%로 낮춘다고 하면, 어쨌든 기술혁신형 기업이라는 건 일반 벤처기업보다는 의미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트렌드에 안 맞게, 요즘 외국에서는 기술 가진 기업을,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는 그것 하나 획득하는 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또 그걸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줄인다는 건 저는 사실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이 벤처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스톡옵션 이런 건 이것하고 좀 성격이 다르니까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 벤처에 대해서 지원하는 큰 틀은 벤처기업에 신규 자본이 투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가 커 나가려면 어쨌든 끊임없는 펀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펀딩 받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오면 여유 자원이 다른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벤처로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투자, R&D, 고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벤처기업에 신규 출자하는 경우에 그때도 5%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M&A 기도 하고 아니면 기술개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자본의 투자거든요. 자본의 투자는 자기가 경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벤처기업에 좀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체 투자금액의 5%를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벤처기업의 엑시트와 관련된 지원 제도기는 하지만 새로운 자본의 투자는 없고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제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지원 대상의 모수는 다르기는 하지만 이 지원을 하는 사례가 아마 제 생각에는 외국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제도여서. 어쨌든 10%, 신규 출자에 비해서 이 공제율이 높다는 게, 적정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벤처기업이 자기가 R&D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고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제를 다 받은 기업입니다. 다 받고서 거의 최저한세 수준의 세금만 내고서 기업이 운영됐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가치가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기업인데 그걸 또 다른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제휴를 하는 단계에서 일종의 손바뀜만 일어나는 거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R&D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제휴·합병이 일어난 이후에 또 새롭게 R&D가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가면 그때는 또 새롭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손바뀜 하는 과정에서는 한 5% 정도의 지원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이 제도가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들어왔던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보면 우리나라가 엑시트에 있어서, 보통 미국이나 이런 쪽은 인수합병이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IPO를 통해서 엑시트를 하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벤처정책 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엑시트 중에서 인수합병을 얼마나 더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거든요.

물론 저도 이렇게 냅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수합병을 더 활성화시키는 제도들을 더 넓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있는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면, 아니면 축소를 해 버리면 오히려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이 역행하자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수합병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인수합병을 어쨌든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벤처를 엑시트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단계에서 적정한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세금까지 넣어서 인수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 줄 것이냐? 그게 또 한시적으로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꽤 많이 늘려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저희들 판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로 안 내리면 큰일 납니다, 과세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 판단이고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같이 판단해 주시면……

○정태호 위원 그런 게 크게 없다면 한번 협회나 이런 쪽 얘기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이건 일단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기재부는 협회 쪽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높여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세지출을 세액공제율 조정을 통해 적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현재도 이러한 경영성과급 지급 성과공유 기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으로 다소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및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세액공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걸 3년 연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와 여타 지원 제도의 지원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15%에서 10%로 낮췄으면 하는 게 정부의 현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팬찮겠습니까?

○천하람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태호 의원님과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49페이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도움은 되겠지만 중소기업 청년 또는 우수인력의 취업 또는 장기 재직 유도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까 말씀드린 건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입니다.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적용 중이고 이런 부분 고려해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정은** 52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비율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또 이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확대에 대한 이익이 주로 외국 기업들한테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저희가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단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반대로 드는 부분이, 이인선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이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각 기업들이 서버를 스스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정부도 이런 부분에 세제상이나 기존 기업의 경영 방식과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IT에 여러 기업들이 많은데 하필 왜 클라우딩서비스만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기업이 자기가 직접 서버를 사다가 서버를 설치하고 컴퓨터랑 네트워크 다 구축해서 썼지만 이제는 아마존이나 네이버나 그런 데 다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IT 서비스를 운용하는 건 차이는 없는데 그걸 자기가 서버를 구축하느냐, 외부 클라우드를 쓰느냐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마존이나 네이버나 이쪽이 돈을 벌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 왜 하지?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보류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윤호중 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 용량을 다 따라가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도심 지역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어려워요, 열선 문제도 있고 전자파 문제도 있고 주변에 민원이 워낙 많아서.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건 에너지, 전력 문제라서 전력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투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나온 법안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윤호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딩서비스를, 아까 차관님이 설명했듯이 본인이 직접 서버를 구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에다가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대부분 큰 기업들한테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윤호중 위원님은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국내에 그런 클라우딩시스템 서버 자체가 많이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저희들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 구축이 되는 부분은 설비투자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10%, 3%, 1%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설비투자니까.

다만 저희들은 10%, 3%, 1% 수준이 아니고 윤호중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또 AI의 어떤 큰 기반이 되기 때문에 AI와 연계된 어떤 투자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일반적인 고객으로서 이용료를 내는 부분, 그건 바로 송금이거든요,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거기까지 해 주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가는 거기에다 지원을 해야지 이용료까지 깎아 주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호 위원 점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있고 그 위에 이걸 구동하는 프로 시스템이 있고 그 위에 이걸 이용하는 일종의 응용프로그램 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까는 지원은 있다 하지만 위층 부분의 발전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이 위쪽에 있다고요. 그쪽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취지로 지금 이 법이 발의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정태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100% 공감하고요. 그 윗단 개발도 아마 데이터센터의 설치와 그것의 기능과 활용 이런 측면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력이 투자돼야 되고 또 R&D가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로 커버해야 될 부분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와 별개로 순수한 그냥 이용료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윤호중 위원** 이용료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법안이……

○**정태호 위원** 이용료 아닌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 여기에서…… 그냥 글자가 그렇게 생겨 가지고 저희가 전체 100%의 범위를 일단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 취지로 한정이 돼 있다면 지금 10%, 3%, 1%는 거의 다 되고 있고 아마 또 위의, 윗단의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것들도 아마 R&D 비용으로 대부분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더 강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이것은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AI 산업발전과 클라우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다음 11번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5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출판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출판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효과와 또 출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판콘텐츠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영상콘텐츠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중소출판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존의 세제 지원이 주로 제조업,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업 부분으로 아무래도 집중이 돼 있다가 관광, 수출의 파급효과가 큰 한류산업에 대한 드라마, 영화 등의 제작에 대한 지원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기본방향은 젊은 사람이 많이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외부효과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영상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해 보자라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아마 제안하신 부분은 간행물, 전자출판, 아마 책에 대해서도 문화 부분이니까 같이하자라고 제안하신 걸로 추정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영상 콘텐츠만큼 파급효과나 외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정성호 의원님 안에 특히 찬성하는데 파급효과 면에서 올해만큼 이걸 하는 게 의미 있는 해도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벨문학상이 나왔고.

사실 우리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그 기반이 결국은 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

습니다. 요즘 원소스멀티유즈라는 얘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콘텐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만 있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해,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콘텐츠의 기반을 단단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출판물에 대해서 이런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영상 콘텐츠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학습 참고서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님 안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영상에 관해서도 지금 재정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출판은 지금 있다면서요. 자료에 보니까 중소출판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던데 영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영화진흥기금도 있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영화 사업에 대해서도 독립영화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천하람 위원 질의는 왜 영상만 둘 다 도와주느냐, 출판도 세액공제도 해 주자 이런 말씀이신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투자, 고용, R&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독특하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나라들이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독특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수년 전에 도입했고요. 거기에는 주로 영화하고 드라마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서 해 주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영화, 드라마가, 이것도 국내 제작에 대해서 더 우대를 하고 영화, 드라마가 나오면 결국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 또 거기에 나오는 국내의 촬영지 또 영화와 관련된 소품들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걸 노리고서 각국들이 일정 부분 해 주는 거고 저희들도 같이하고 있고요.

또 다음번에 나옵니다만 게임은 왜 안 해 주냐, 우리나라 게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잘나가는데 왜 영화만 해 주냐, 또 왜 음반은 안 해 주냐, 왜 비디오물은 안 해 주냐 등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비춰 가지고 같아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많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떤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영화만큼 파급효과가 큰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영화를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출판하고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는 제작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작사가 영화를 만들어서 몇 개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대박이 나고 하는데 제작사가 모든 배우들도 고용하고 설비도 투자하고 작가, 스태프를 다 고용해 가지고 하나의 영화를, ‘A 영화 만드는 데 300억 들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어쨌든 매번 영화가 대박이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제작비용의 일정비율을 제작사한테 지원해 줍니다. 제작사가 영화 성공의 근본이니까요.

그런데 출판 콘텐츠에 대해서는 결국은 해 준다 그러면 출판사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작가의 경우에는 그냥 개인 인적용역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출판 작가의 경우에는 어쨌든 인적용역으로서 다양한 필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는 것이고 또 개인사업자로서 내는 부분인데 작가한테 특별한…… 가수, 작가, 스포츠인, 영화배우 등등 있을 텐데 작가한테 별도로 세금을 깎아 준다? 뭐 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의 콘셉트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영화 제작사하고 대비되는 것은 출판사의 경우인데 출판사한테 그 출판사의 출판 제작비용이라는 게 과연 뭐냐. 결국은 종잇값하고 기계, 인세 등등인데 작가한테 또 인세를 줘야 되겠지요. 작가한테 주는 인세는 또 책의 판매 비율의, 매수에 비례해 가지고 드리는 건데,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떤 걸…… 영화 콘텐츠의 경우에는 제작비용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출판과 관련해서는 책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를 제작비용으로 봐서 누구한테 깎아 줄 거냐, 그게 어떤 필요한 지원이 되는 방식과 수준이냐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책이나 작가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면 책 같은 것은 부가세 면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부가세 측면에서의 제도가 있고 다른 재정지원 쪽에서 좀 더 작가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세액공제를 이제 영화에서 출판까지 넘어가기 시작하고 다음에 또 게임, 방송 등등 넘어가면 사실상 모든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를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조세 체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이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의 관점은 저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생산물은 대단히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어서 투자의 방향이 여기가 아니라 오히려 콘텐츠가 나오기까지의 초기 단계, 예를 들면 내용이라든가 하여튼 창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이쪽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출판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개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영세한데 참고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출판사들은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단행본을 만드는 출판사들은 되게 영세해요. 그런데 한때 많은 독서인구가 있을 때에는 이런 출판사들이 경영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는데 지금 고사 지경에 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최종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그 기반이 되는 이런 책들,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책이든 이게 무너져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최종 생산물로서의 문화 콘텐츠 이 자체도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출판에 대한, 특히 단행본 쪽에 대한 지원은 지금 가장 절실한 시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한강 노벨문학상 받은 것은 그야말로 물이 들어온 거거든. 이때 이걸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출판 시장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가장 중대한 시점이다 그런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정성호 의원님이 낸 이 법은 되게 중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세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세수감이 되나요?

○전문위원 이정은 이것은 예정처에서도 추정 곤란으로 왔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추정 곤란?

○전문위원 이정은 예, 확정하기 어려운 불확정한 면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추정하기 어려운 게 방금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판문화에서 출판사, 단순한 인쇄소가 아닌 기획부터 시작하는 출판사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데 그 출판사의 어떤 비용을 감해 줄 것이냐.

○정태호 위원 실제로 출판사가 기획을 해 가지고 작가를 섭외하고 그리고 그 작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출판사에 대한 지원인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의 부분은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다가 토론회가 있는 걸 보고서 거기 발제 자료를 한 부 달라 그래 가지고 받아 봤습니다. 다양한 지원 필요성 또 효과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겠지, 발제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제일 고민이 다 아시다시피 한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진짜 경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출판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한번 차용해 보고 더 고민했을 텐데 거기에 그냥 출판비용 세액공제, 출판비용이라는 단어 딱 네 글자만 있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태호 위원 제가 찾아 가지고 올게요.

○소위원장 박수영 조세 실무에 아주 능하신 임광현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임광현 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취지는 저도 정말 공감하고 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지금이 상황에서 책을 읽는 그런 어떤 문화도 좀 일으키고 뭐 이런 것은 되게 좋은데 조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세제실장님 얘기도 되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게 아니고 출판과 컨텐츠 이쪽을 타기팅을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들은 급해져 있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태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원을 한다는 방향은 정해 놓고 방법을 찾아오겠다는 거지요.

○임광현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윤호중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작가들에 대한 세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작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특별히 작가를……

○윤호중 위원 그냥 비과세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요, 비과세는…… 당연히 소득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작가가 됐든 작곡가가 됐든 작사가가 됐든 프로그램 제작자가 됐든 그냥 인적용역자로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인적용역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증빙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실제 소득세 부담을 많이 줄여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 있는 작가들은 밑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사업자가 돼 가지고 일반적인 복식부기에 의해서 정리해 가지고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인적용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감면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우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사실 한강 같은 작가를 더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다른 작가들, 다른 책을 쓰는 사람들이 책에 대한 수요가 한강 작가한테 전부 몰려서 오히려 다른 책이 안 팔리는 그런 걸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

이를테면 지금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출판사 그다음에 다수의 작가들, 작가는 책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작곡가, 작사가도 있고 그다음에 연극, 영화, 드라마의 작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자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창작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기가 영화, 드라마같이 큰 시장입니다. 그 제작자들에 대한 지원은, 영상 콘텐츠 그러면 주로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영상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 콘텐츠 위주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극을 만들어 내는 극단들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데서 연기자들을 훈련시켜 내고 있는데 이런 기반이 되는, 우리 한류문화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곳에 대한 지원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점점 범위가 커지는는데…… 영상에서 출발했다가 출판, 음반 나갔다가 이제 연극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기재부에서 그동안 보면 주로 경제, 산업 이런 쪽으로는 하면서 문화 쪽은 산업으로 취급하지 않고 지원이 약소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해서 다음 논의할 때는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이 세제 지원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 방금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유념해서 검토를 해 보겠는데, 나머지 세제 지원을 제가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기는 한데 사실 세제 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고용이 들어가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할 때는 굉장히 그 기업들이 의미가 있는데, 초반에 어느 정도 비용을 상각,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돈은 들어갔지만 상각이 연차에 걸려서 나오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때 실제로 들어간 돈에 비해서 소득이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범인세가 부담이 되고 재투자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작가나 극단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소득이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게 첫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의 재정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세제 지원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 문제는 세제실장님의 답변할 범위를 넘어서 차관님이 답변하셨

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영상 콘텐츠 부분도 진짜 세제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다른 기재부의 정책 라인이 무리해 가지고 집어넣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을 전반적인 문화산업으로, 그런 취지로는 이해를 안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문화산업의 바탕이 되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재정이나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은 거의 대부분 반대하니까 차관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단 한 번 더 논의하기로, 보류하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전문위원 이정은 그전에 아까 물어보셨던 예정처 비용추계는 범률안만 봐 가지고는 공제 대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서 미추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미리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개정안은 현재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던 공제 대상을 문화 콘텐츠나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또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산업의 지원이 가지는 과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확장해도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계 지어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이거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기재부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69페이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삭제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2025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삭제해서 영구화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일몰기한 삭제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또 반면에 해당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모든 조세특례의 기본원칙이 3년 내지 기한 도래했을 때 검토하는 게 저희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특히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같은 부분은 저희가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를 보면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승수 의원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과세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출자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여력을 확대하고 또 이를 통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과세특례는 피출자법인을 지원할 여유자금이 충분한 출자법인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개정안과 같이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이미 자산을 매각하고 피출자법인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출자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이 현재 부동산 PF 문제랄지 전반적인 건설업 경기침체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것으로는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행 제도는 채무 당사자인 법인이 본인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서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외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아마 여기에 추가로 모회사가 자산매각 대금으로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자산 과세특례를 적용하시려는, 특례를 도입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셨던 부분들이나 현재 부동산 PF 상황을 봤을 때 일정 부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정부도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셨던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께서도 악용의 우려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보류했다가 세제실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내 공장 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 축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본사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러한 감면 대상에 계속 포함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이전의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서 공장의 수도권 내 이동을 억제하고 또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 중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거나 인구 감소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은 이러한 이전 대상에서 배제되어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감면받은 기업의 18년부터 22년간 자료를 봤더니 전체 5년간 거의 90% 수준이 수도권 내로 이전을 해서 균형발전 취지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국토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에서 수도권 내의 이전 부분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수도권에도 인구 감소 지역들이 좀 있습니까?

○ 임광현 위원 강화, 용진, 가평, 연천 그렇게 네 군데……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인천하고 경기도에 두 군데씩 있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두 군데씩이요? 그쪽으로 가는 경우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나머지는 인정 안 해 주겠다 이런 것이지요?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 및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잠정 의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은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감면기업 적용 제외 및 동일업종 영위 기간 요건을 아까 말한 지방이전지원세제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이미 한 번 받은 기업은 관련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이에 대한 업종요건 또한 강화를 해서 이전 전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을 여기에다 기간 요건을 추가해서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세지출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또 감면 요건을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함으로써 조세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장이전세액감면 제도는 이전한 공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제공하자는 그런 제도임을 고려할 때 비록 과거 10년 내 공장이전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공장을, 신규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또 세액감면을 받는 게 중복 감면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정 취지는 지방이전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몇 건이 되느냐는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데 감사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감면 기간 종료 후에 공장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서 혹시나 모를 그런 부분에 대한 루프홀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도권 밖으로 나갔다가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수도권으로 들어온다 이런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런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루프홀 방지라고 하니까 이것도 별다른……

이종욱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욱 위원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막자는 건데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이종욱 위원 선의의 피해자도. 그런 법인세, 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게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라 중복 감면을 하지 말자는 취지니까,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리고 이게 10년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10년이니까…… 아마 감면기간이 7년이고 감면받고 나서 수도권 왔다가 또 정말 선의에 의해서, 다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몇 년간, 한 삼사 년 운영을 하다가 ‘아니야, 다시 가야 되겠어’ 이런 경우에는 또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려가면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또 이 10년이 되기 전에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렇게 긴 기간은 설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하여튼 하위법령 만들 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89페이지에 보면 둘째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장을 지방에 이전할 유인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추가로 다른 공장을 지방에 이전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닙니다. 기존 공장이 같고 새로운 공장이 내려가는 부분

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납득이 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실하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논의하면서…… 저희들 정부안이 약간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지적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문을 좀 다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 이 안건도 정부안 및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전세액감면 제외업종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은 기술적인 사안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 시 미비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문 정리 차원의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및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저께 법인세법 하실 때 한 번 심사하신 건데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해서 이런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때 우리 충분히 논의를 했고 잠정 의결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내국인에게 지급된 배당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기업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는 효과와 또 배당 촉진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귀속되어 감세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건에 대해서는 박수민 의원이 전반적으로 배당을 활성화해서 내수 경기도 살리고 주식시장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아마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까 앞서 말한 밸류업 세제를 우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희망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이 내용이 상출제 대상 기업에 한정되는, 저희가 제안한 것보다는 범위가 좀 좁아진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건 좀 실무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배당을 단순 추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면 투상세 전반적으로, 투상세의 세율이랄지 기업소득의 투상세 소득 비율이랄지 하는 부분을 전면 재설계해야 되는데 현재 이 투상세 제도 자체가 25년에 일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했었을 때 정부는 일단 우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밸류업 세제 쪽으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비슷하다면 그쪽을 우선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밸류업 세제는 보류해서 나중에 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보류를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해서 보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도, 정부가 낸 것을 우선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꼭 이 말씀은 남기고 싶은데요. 지금 상속세와 배당세가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높이지 않고 배당을 하지 않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자본시장과 모든 기업계에서 공론화시키지 않은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정부의 밸류업 세제 그리고 저도 좀 아이디어를 낸 이 세제 등을 복합해서, 정부 것을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충분하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제를 바꿀 때는 동시에 목적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치 못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박수민 의원님 안 포함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건 일단 보류하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이정은** 102페이지입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부분으로 개정안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몰이 2025년에 도래하니까 그때 논의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도 전문위원과 같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박수영** 25년에 되기 때문에 내년에 논의하자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박수민 위원님, 특별히……

○**박수민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내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은 106페이지입니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4건의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해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4건의 개정안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도인 이른바 톤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또 정부안과 정태호 의원님 안은 시행령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톤당 운항일 이익을 선박의 소유 현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2005년 톤세제 시행 이후 물가 및 운임 상승 등을 감안하여 자사선 확대를 위해 기준선박 외 용선에 한정하여 톤당 운항일 이익을 30%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앞으로 자사선에 비해 용선에 대해서 좀 더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러한 개정안의 적용기한 연장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돼 온 톤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운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톤세제도의 필요성들을 많이 인정하고는 있지만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또 2026년 이후 매년 6000억 이상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톤당 운항일 이익을 선박 소유 현황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만약 정부 발표대로 대통령령이 개정된다면 2차 해운기업의 자사선 보유를 촉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투자 여력이 작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간 격차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여러 가지 말씀 한꺼번에 다 해 주셨는데, 톤세는 2005년 도입이 되었고 박성훈 의원님도 강하게 주장하시는 안이시고 정태호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5년 동안 일몰하는 제도도 저희 특례제도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예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 부분은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5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실효성이 있는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국적선하고 용선 부분의 차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적선 확보를 좀 더, 아무래도 공급망 경쟁이랄지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도 아마 우리하고 유사하게 세금 부과를 차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우리 경쟁국들도 톤세를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112페이지입니다.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서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부터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서민금융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면서 궁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존에 금융권 사회공헌 촉진, 서민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이랄지 새출발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 기간을 특례로 3년 연장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1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7건의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의원님들마다 연장기한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 이 중 최은석 의원님 안은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의 세액감면 기간을 또 별도로 연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계십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또 국내 투자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마는 비교적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율이라든지 지원 기간이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본 취지는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급망 문제랄지 미중 경쟁이랄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최근에 지원 요건을 기존의 5년 100%, 2년 50%에서 7년 100%, 3년 50%로 좀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 부분도 완화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부안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외 변동성이 커진다든지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그때 한번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은석 위원 실은 제가 제조업에 근무해 보면 국내의 여러 가지 제조업에 대한 이런 세액감면 같은 인센티브가 글로벌 선진국가들에 비해서도 경쟁 우위가 별로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제조업 공동화도 되게 우려되고 해서 조금……

제가 왜 이렇게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했냐 하면 해외로 이전한 공장이 다시 국내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사결정의 범위나 규모가 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정부가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연장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정부도 유턴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하고 최대한 넓게 해주는 게 정책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작년 말에 원래 7년이던 거를 지금 10년으로 늘렸습니다. 10년 늘렸는데 또 1년 만에 더 늘리는 안을 가져오셨는데, 그 정책 방향에는 동의는 하는데 다만 새롭게 늘렸으니까 한 2~3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판단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이 기업에서 오래, 평생을 근무하신 분이라 현장 감각은 아마 세제실보다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세제실에서 다음번 회의 때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최은석 위원** 이렇게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게,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들이 정말 국내로 다시 들어오면 정부가 확실한 혜택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정책에 대한 걸 보여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궁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아까 공급망 문제랄지 여러…… 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도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유인책을 주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산업부의 외국인 투자 보조금 같은 경우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 가지고 어떤 방식이 더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제가 이 공장 투자를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특정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하고도 비교우위가 없다는 것들을 잘 감안해서 궁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저는 데이터 보고서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실적을 보면 법인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거의 무실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해외진출까지 했고 다시 국내에 복귀할 정도면 개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예측이

들고요.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은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보면 업체 수나 그다음에 세액감면 금액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 제도가 담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실에서 고민하실 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만으로는 지금 한계에 와 있다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이 부총리님하고 함께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박수민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돌아가셔야 돼 가지고 22번, 138쪽부터 먼저 좀 논의하고 예결위로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1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회수가 곤란한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영행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해외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해외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건설업에 대해서만 현지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 손실에 대해서 이러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 또 모회사의 대여금 회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본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건 채권 포기에 해당이 되고 임의 채권 포기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박수민 의원님이 위낙 중동이나 해외 사례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아마 사례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짐작컨대는 중동 현지 법원에서 파산이나 그런 선고지연이 있어서, 이런 특정 사례가 있는 것을 아시고 아마 이런 법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알려 주시면 저희 원칙하고 실제 현황하고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동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발굴한 사례인데요. 중동에, 회계적으로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위해서 건설 자회사를 현지 파트너랑 만드는데 대여금 형태로 자금이 나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출자금 형태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 대여금은 국내적으로 볼 때 손금 처리가 쉽지요. 그런데 출자로 나간 것은 이것이 나중에 또 돌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회계적인 저희 국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금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손해가 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청산이 미루어지거나 하는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이것이 자본금화돼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을 낸다는 전제하에 실질과세 원칙 또 형평성의 원칙에서 현지 기준으로는 출자금까지도 손금 넣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해외진출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박수민 위원께서도 위낙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 원칙하고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보류를 하고 박수민 의원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전문위원 이정은** 1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채권 포기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상황에서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또 채권 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중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 중단 시 그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6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시공사의 매몰비용 보전의 범위가 법인세 감면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공사들이 선제적으로 채권을 포기할 만큼 그게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세지출도 연간 1억 원 안팎으로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 설명하셨지만 정비사업 활성화하고 조합 인가 취소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 손금 산입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 이 있는 상황하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다.

○**정태호 위원** 이것을 손금에 산입을 하면 소송을 못 하게 돼 있나요?

소송도 하고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 달라는 이유는 어쨌든 미리 돈을 일부 줬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하고 인가받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이 일부 건설사로부터 들어갔고. 그런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지정구역의 해제 등으로 해 가지고 사업은 어그러졌고 그러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게 대여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돌려

받아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돌려줄 돈이 없지요, 사실은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그 조합원들한테 ‘야, 우리 돌려줘야 되니까, 사업은 실패했고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분명히, 장부상으로는 받을 돈이 1억 원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순간 그게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증여로 처리될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손금 산입도 못 하고 오히려 조합원한테는, 또 국세청에 가 가지고 ‘1억을 증여를 받으셨네? 증여세를 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합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왜 돈 받을 것 있는 걸 안 받고 기다리고 있느냐 해서 또 주주 배임의 어떤…… 뭐 배임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순수한 배임의 영역으로 보면 소송을 안 걸면 또 그것도 이상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세제 원칙에는 굉장히 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것을 안 해 주면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그래서 이 갈등의 요인은 어쨌든 세금 문제만 없애 주면 기본적으로는 회사들이 소송을 안 걸고 그냥 포기하고 끝내 버립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심지어 차압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건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소송 자체도 취하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당연히 취하합니다. ‘취하할 테니까 세금 문제 아무 문제 안 걸리게 해 주세요’라는 게 이 제도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법에다가 소송이 걸리는 경우 취하해야 된다라는 게 세법 요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게 없으면 둘 다 같이 하지, 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채무포기확인서를 제출한답니다. 확인서를 제출했으니까 더 이상 소송해서 자기가 받을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좋네.

○**소위원장 박수영**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안 및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잠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1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개정안이 제안됐지만 이 중 김윤덕 의원님 안은……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 박성훈 위원도 지금 안 계시는데 박성훈 위원 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예.

그러면 133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이월공제 대상 미공제 배당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결손금과 배당금액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어제 법인세법 심사 시 동일한 내용을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인세법에 다 논의했던 거니까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 정부 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14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자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 이런 출산장려금 지급 여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 종사자에게 혜택이 편중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어제 논의하셨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 부분의 출산지원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고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이것 필요경비로는 인정해 주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다음에 가서 또 세액공제를 한 번 더 해 준다는 뜻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1억을 자기 직원한테 주면 일단은 2000만 원은 어쨌든 법인세에서 자연스럽게 세이브가 된 거고 거기에다가 4000만 원을 국민 세금으로 좀 달라, 우리 직원들 주고 싶다……

○**최은석 위원** 이것은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계류……

○**소위원장 박수영**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계류하실 건지 물어본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이것은 계류시켜야지요.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50페이지, 24번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내용인데 이 내용은 153페이지의 25번 사항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번과 25번 사항은 모두 우주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24번 개정안은 2024년 9월

달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범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153페이지의 25번 개정안은 아직 의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박대출 의원님이 발의하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신설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의 입주 기업에 대해 범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또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항공우주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있어 R&D 및 투자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일단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발의안의 뜻과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특구 제도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세제도 각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도 그렇고 어차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선정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주클러스터로 지정이 되더라도 기회발전특구 동시에 지정을 할 수 있고.

지원을 몰아서 하자는 게 기회발전특구의 취지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규제랄지 재정이랄지 세제랄지 지원하는 게 우선 되는 게 아닌가. 나머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필요성은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특구가 우주산업클러스터 이것만 있는 것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많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국에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거는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 및 손금산입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수영 의원님하고 송언석 의원님 두 분이 내셨는데 이 중 송언석 의원님 안은 아직

회부되지 않은 거지만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심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거나 또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촉진해서 지역 상점가 등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정부 예산에 연동되어 판매 가능한 상품권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및 사용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대체할 뿐 총판매액 및 사용액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사용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의 특례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 이것 하려면 지역화폐도 같이 해야지요.

○**임광현 위원** 예, 이것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것도 지역화폐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재논의.

이제 끝난 건가요? 또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마지막 자구 수정 하나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하나 더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은** 예.

○**소위원장 박수영** 하나 하시고 그다음 것.

○**전문위원 이정은** IV-1권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63페이지, 업종 명칭 변경은 현행법상의 업종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문 정리 작업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건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지금 2개인가 3개를 세워 놨는데, 신영대 의원님하고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 안 오셨는데 약간 휴식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사이에 오시면 하고, 이걸 내일까지 미루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후반부에 오실 수 있다면 그때 심의하고 아니면 오늘 우리끼리 심의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20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신영대 의원님과 박성훈 의원님 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은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기업의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아까 설명은 다 들으셨습니다. 논의만 아직 안 하시고요.

○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정은 예.

개정안은 기업이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 및 취업 문제를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기업이 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아까도 설명은 드렸던 부분인데, 별표 6에 있습니다. 현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다 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등 운영비로 발생한 부분은 현재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신영대 의원이 특별한 다른, 루프홀(loophole)이나 그런 게 없다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은 보류를 하도록 하고……

○ 전문위원 이정은 계류.

○ 소위원장 박수영 계류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신영대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 박성훈 의원님 안.

○ 전문위원 이정은 박성훈 의원안 7번, 36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상시기업 근로자 1명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업의 전문인력 고용 확대 및 또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연구개발 활동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면세액이 감면 한도보다 작은 기업들의 경우는 전문인력 상시근로자 고용에 따라 감면 한도가 늘어나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지원 효과가 좀 제한적인 면이 있고

또 다른 유사한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저희 제도를 보시면 현재 감면 한도가 투자 누계액의 50% 플러스 (상시근로자 수×1500만 원)을 원래 해 주되 청년근로자와 서비스업은 2000만 원으로 저희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전문인력을 추가하자는 박성훈 의원님의 제안이십니다.

저희는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범위를 규정하기도 그렇고 이미 청년을 우대하고 있는데, 박성훈 의원님의 진의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생각에는 이미 모든 사람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 청년하고 말씀드린 서비스업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범위를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는데 박성훈 의원님이 특별히 정책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현재 상황에서 저희는 지원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임광현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임광현 위원** 차관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전문인력의 범위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청년근로자하고 서비스업 그 외에 상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상시근로자로 웬만하면 전문인력을 포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7번 안건은 보류하고 기재부나 전문위원께서 박성훈 의원님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0번 안 하셨습니다, 박성훈 의원님 안.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해서 내국법인이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문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또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스포츠 종목의 경우 대회 운영비용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다른 종목에서 대회 운영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배경 설명차 말씀을 드리면 이스포츠에 대해서는 다른 비인기종목 운동 경기부와 함께 설치한 기업에 대해 설치 후 3년 동안 경기부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포츠 운영비용은 현재 손금으로 이미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님이나 박성훈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스포츠가 초기라서, 세계적인 효과를 보고 우승도 많이 하고 있는데 초기라서 이제 상당히 열악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이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업계의 얘기가.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보육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박성훈 의원하고 저의 안이고 김윤덕 의원님 안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성훈 위원도 안 계시고 하니 이것도 일단은 보류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최은석 위원** 이스포츠 대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콘텐츠 쪽에서도 대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 창출이나 이런 기회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으로 한정하는 박수영 의원님 안이 조금 더 국내의 이스포츠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는 박성훈 의원님 안에 찬성……

저도 앞서 취지는 다 공감하고 박수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포츠에서는 지금 우리가 혜택모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적극 찬성하고요.

다만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으로 한정할 경우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시작된 게 스타크래프트 리그입니다. 스타리그가 사실 시작이었는데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으로 한정했다면 스타리그도 사실 탄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페이커가 있는 T1 같은 경우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도 사실은 내국 게임회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물론 우리 내국 게임업체를 도와야 되는 취지나 이런 것 저도 백분 공감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면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게임으로 문호를 열어 주는 것이 기존의 히스토리나 현재 상황에도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은석 위원** 조금만 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는데 LoL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점력이 심해 가지고 저는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든 해외 기업들의 독점력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더 방점이 주어져야 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과 생각이 좀 다르지만 내국법인을 좀 더 우선적으로 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도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오기형 위원** 공감은 하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잘 몰라서요.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으로만 운영되는 이스포츠 대회 또 외국법인이 만든 게임으로만 운영되는 이스포츠 대회가 각각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열립니까?

○**천하람 위원** 보통 게임 종목별로 열리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저기 보고 물어봤는데……

○**천하람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마주쳐서, 죄송합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아시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천하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정확하게, 이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축구하고 배구가 동시에 열릴 수 없듯이 하나의 종목에서 하나의 게임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종목별로 열리고 한국에는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 이스포츠 경기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또 우승도…… 최근에도 또 LoL 우승했던가, 뭐 우승했지요?

○**천하람 위원** 예, 월드컵 우승.

○**소위원장 박수영** 우승하고 그래서 사실 BTS급입니다, 인기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이 산업도 육성을 하면 우리 게임산업도 발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 지역인 부산에는 G-STAR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게임대회를 하는데 부산이 길이 다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고 있는 이런 산업이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 했더니 또 지원사격을 해 주시니 기재부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래 운동 경기부, 아까 차관이 설명드린 운동 경기부, 기본적으로 이스포츠가 활성화되려면 운동 경기부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추어 게임도 있지만 또 준프로에 가까운 실업·프로 이런 팀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수준 높은 게임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운동 경기부가 창설이 돼야 되는데 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면, 사실은 웬만한 운동 경기부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물론 홍보 효과는 나오겠지만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운동 경기부 설립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는데 거기에 굉장히 인기 있는 축구·야구·배구 이런 것은 안 해 줍니다. 비인기 종목만 해 주는데, 이스포츠에 대해서도 똑같은 스포츠라는 개념하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스포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룰 같은 경우는 거의 축구에 버금가는 월드컵 같은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배제를 별로 안 하고 전 종목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전통적인 스포츠보다도 게임에 대해서 더 많이 해 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산 같은 곳에 대전 스포츠경기장 같은 화려한

경기장을 짓는 게 더 중요하지, 게임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부산에 경기장 아주 좋은 것 있습니다. 서울 경기장하고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3종 스포츠센터 있지요.

차관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지원 항상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관님이 잘 검토해 주십시오.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에 어느 책으로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정은** IV-2를 봐 주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IV-2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166쪽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은** 예, IV-2는 166쪽부터 시작을 하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에서 공제율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일괄해서 3% 또는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늘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세제 지원이 투자 확대로 연결되는 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 개정안처럼 추가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 등에 귀착되는 비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국가전략기술 포함해서 통합투자세액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년 의원님 포함해서 여야 의원님들 통틀어서 아마 국가전략기술,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다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내용은 기준에 추가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에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의 추가 투자에 대해서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는 4%를 하고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0%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지금 국가 간에 기술패권 전쟁이 심각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첨단 분야에서 기술의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제율 증가분에 대해서 올리는 데, 이에 대해서 예타 평가를 좀 하셨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 예타 면제사유로 봐 가지고 안 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사유요?

○**안도걸 위원** 예, 사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심층평가를 한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도걸 위원** 심층평가를 했습니까, 이것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예타를 좀 해서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세 형평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감안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사실상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에 세금 감세 혜택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전체의……

○**안도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 이상 된다고 지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한 60~70% 정도 될 겁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워낙에 많은 숫자를 지금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는데 지금 증가분에 대해서 10%까지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 공제율을 초반에 8%까지 갔다가 지금 15%, 대기업 기준으로 대폭 올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을 감안해서.

그러면서 추가공제의 경우에도 일반과 국가전략을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줄었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를 구분해 가지고 증가분도 적용하는, 증가분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일단 둘을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이 어쨌든 투자세액공제가 아까 말씀하신 최근의 여러 가지 배경하에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행 수준이 특히 국가전략기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높다, 충분히 높다는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좀 더 세금 감세효과가 적으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감면 제도의 운영이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일반 공제율은 올리지는 않고 증가분은 좀 대폭 올리는 거로 그렇게 정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고, 이거와 별개로 R&D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대폭적으로 늘렸지요?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전략기술 같은 경우는 몇 %까지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4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좋습니다마는 재정이 이렇듯 지금 어렵고 결손이 심각하게 난 상황에서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그리고 R&D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합쳐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이거를 대기업까지 같이 올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감안해서 중소기업에 우선해서 증가분을 3에서 10 올리고 대기업은 조금 차별화하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조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충분히 많이 공감되는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저는 신성장이나 원천기술, 전략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되게 빠른 속도로 투자…… 물론 뒤에 R&D 말씀도 하셨지만 R&D와 더불어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좀 더 아주 빠르게 의사결정될 필요가 좀 있고.

실은 물론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보면 대기업들이 여기에서 빠르게 선점하고 그다음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과제로 보면 되게 중요해서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에 아무래도 혜택이 조금 더 많이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 원안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비슷한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쟁하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세계 지원 외에 직접 보조금까지 달라고 하는데 재정 형평상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일정한 유인을 제공하는 이런 추가공제율 상향하는 것은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서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혹시 우리 경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자료는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계 지원으로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른데 저희가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R&D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국보다 좀 강하게 지원하는 편이고요,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국들에 비해서 약하게 지원하는 편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바로 지금 같은 시설 투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본이나 미국 같은 우리 경쟁국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주로 일본, 미국, 대만 정도가 많이 사례가 언급되고 또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텐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도는 어쨌든 미국은 IRA법이나 킷스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25%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씩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은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배제를 해야 되고 또 근로자의 일정 부분은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일정 이상 줘야 되고 등등에 대해서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유치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일본은 주로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투자세액공제는 이미 TSMC라는 어마어마한 잘 안착이 된 기업이 있다 보니까 대만은 5% 투자세액공제밖에 적용 안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R&D하고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다만 대기업으로 한정해서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다만 보조금이나 입지 이런 면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입지 쪽에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기재부가 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경쟁국들이 세제 지원보다는 보조금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글로벌 경쟁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고 또 기술 경쟁에서 우리의 우위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분야 또 기업 이런 것들을 아주 선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어쩌면 그렇게 전략적 선택에 의한 집중적인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내놓는데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기재부 입장은 반대 입장은 많이 표명해 왔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기존의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삼사 % 추가하는 것을 10%까지 늘릴 생각이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늘려주기보다는 보다 더 전략적인 선택을 통한 집중적 지원 그거는 보조금이 더 유용하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또 다른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인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법인세율을 인하해 주는 취지는 법인세율 인하가 된 만큼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투자까지 연결되는지는 불투명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투자세액공제라든지 이거는 이미 기 일어난 투자에 대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해 주려면 저는 세율 인하보다는 투자세액공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취지는 공감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이나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세제를 하고 있고 이번에 더 상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투자 유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공제율을 다 각자 차등화해서 맞춤형으로 나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는 없지만 연구 진행이라도 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뿐만 따로 저희들이 별도로 검증한 건 없고요. 아까 안도걸 위원님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평가를 하면서…… 심층평가가 당연히 필요성과 효과성을 같이 검증을 합니다. 그 효과성에서 아마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요약해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투자하고 세액공제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결론 나왔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정치하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국 에비던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연구용역 같은 거를 좀 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제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쟁점도 많이 되고 순서도 맨 나중에 몰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더 진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심층평가는 누가 한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심층평가는 저희들이 맡기면 조사연구원 또는 KDI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자료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좀 돌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안도걸 위원님, 정부안대로 가고 또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 보고……

○안도걸 위원 자료 한번 보고……

○소위원장 박수영 자료 보고 하시겠습니까?

자료 빨리 갖다 드리고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저희들 추가분 말고 기본에 대해서도 올리자는 의원님들의 제안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아마 같이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리하시지요. 같이 자료를 주시고.

전문위원님, 그러면 몇 번까지가 우리가 함께 해당하나요? 전부 다 그런가요?

○전문위원 이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한번 설명을 쭉 듣고 가지요, 일단.

다음 것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에 171페이지, 일반 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기업 R&D 투자를 촉진하고 또 고용촉진 또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R&D 투자 결정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또 기업의 R&D 투자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추세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R&D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10%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그다음 것도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정은** 그다음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중소기업 졸업 후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축소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적용하던 신성장·원천기술 R&D 우대 공제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감구조 도입은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 혜택의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4년 또 연장할 예정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를 고려하여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우대를 폐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과 정부가 이거와 별도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수준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정도 늘어나는 점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건은 앞서 말씀드린 건하고 약간 다른 건입니다. 저희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의 일환으로 갑자기 절벽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감구조를 도입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저도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2년 연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점감구조 도입은 저는 중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행령에서 2년 연장을 하지 말고 점감구조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2년 연장하고 점감구조를 도입하지 않거나 이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보면 세수 감소…… 정부 추계서에 투자세액공제가 12억 그다음에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가 13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작습니까?

조세 분야 검토보고서 93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세수 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서,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투자세액공제에서 12억의 감소 그다음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약 13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작아서 체크 좀 한번……

○**소위원장 박수영** 이 자료가 아니고 세부자료 말씀하시는 모양이지요? 임광현 위원님, 페이지가…… 그렇지요?

○**임광현 위원** 이것 기획재정위에서……

○**소위원장 박수영** 검토보고 자료?

○**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제출 법률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는 중견기업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은 중견기업 숫자가 적고 더군다나 매년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올라가는 기업은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1년에 몇 개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개 안 되는 기업들한테 어쨌든 올라갈 때 그나마 스무스하게 내리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세수 효과가 작게 나온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겨우 1년에 12억,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세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제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로 적용받는 데 있어서는 기업들이 복잡하게 느끼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견기업으로 1년에 하나라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소중한 중견기업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올라가든 10개가 올라가든 앞으로는 100개가 올라가든 이런 전체적인 슬라이딩을 만들어 주는 게 기업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는 바고요.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한 것이고요.

○**임광현 위원** 저는 연간 이 제도를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감세 추계가 12억인데 이게 기업들이 원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겨우 12억 원 전 기업에 대해서 감소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세제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참고로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행령 관련 사항은 저희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조특법 시행령인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건 이미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다음 것, R&D 관련해서 쭉 모아서 같이 보기로 했지요?

○**전문위원 이정은**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어서 같이 일괄해서 보시기가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중에서 신영대 의원님 안은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세액공제 제도가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있어서 동 제도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도 있고 또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취지의 개정안을 내 주셨는데 일단 우선 일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른 여러 가지,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성과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지원 수준에 있어서는 아마 다른 국가의 경쟁이랄지 여러 의견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세수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었을 때 현행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 부분에 대한 조정 정도만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 또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R&D는 다 같이 묶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반도체산업의 R&D와 시설 투자를 촉진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반도체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반도체산업 내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중에 반도체 기술 관련 중고품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있는데 반도체 관련 중고품 장비를 구매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이 시행 중이고 또 특히 중고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최초 취득 시 이미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중고품에 대해 다시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중 지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반도체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셔서 아마 이런 취지의 법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전략기술 범위 내에서 같은 틀 내에서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희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처음에 반도체, 아마 제 기억에는 세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6개까지 분야가 늘어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특별히 더 중요한 산업이라서 김태년 의원님이나 정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분야만 특별히 지원하는 게 앞으로도 영구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지원을 늘리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면 다른 재정

지원이 됐든 아니면 특정한 R&D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려가 있든 그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그다음 것까지 보고하고 전체적으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14페이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손실 발생 또는 최저한세 등으로 세제 혜택을 다 받지 못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도 그렇고 최대 10년에 걸쳐 이월공제를 혀용하고 있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추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것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아마 업계에서는 투자를 해서 현재 당장 이익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 같고 미국에서도 아마 일부 유사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급 방식으로 하면 최저한세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세수감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까 세제실장도 말씀했지만 지금 극히 예외적으로 두 가지 분야, 아까 EITC랑 자녀 세제 지원 두 가지 부분에서만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직 몇 개 남았지요?

○**전문위원 이정은** 2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이 중 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5년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2%p 상향하여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걸 방지하고 또 선제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이 투자를 조기에 늘리도록 2023년에 한정해서 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7년 연장 시 연평균 세수가 1조 299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고금리와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기업을 제외하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도 같은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제 하나 남았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정은 예.

○소위원장 박수영 마저 하고 전체적으로 의견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223페이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과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22건의 개정안입니다만 신영대 의원님 안은 회부되지 않았지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 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경제 활성화 및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공제율 인상을 통해서는 기업 투자를 증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략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의원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셨다시피 대기업 지원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는 정부안 수준으로 연장을 했으면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이게 끝이 아니고 아직도 뒤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부분이 계속 있네요.

○윤호중 위원 지금까지는 공제율, 뒤에는 세액공제……

○전문위원 이정은 그러기도 하고 232부터는 국가전략기술의 새로운 분야 추가 등이라……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하고는 조금 논의가 다르다?

○전문위원 이정은 앞에 부분 논의하시고 이건 바로 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공제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분야 추가 이런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이거지요?

공제 부분에도 위낙 많은 안들이 나와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계신 분들 의견 개진하시고 그걸 받아 가지고 소소히 이런 데서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인 의견 주실 분 있으면……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도걸 위원 제가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AI(인공지능) 분야, 아마 인공지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향후의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대상으로 할 건지 그것은 잘 분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AI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이론의 여지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AI 관련 기술 지수가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미국하고 비교해 봐 가지고 우리가 한 30~40% 정도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AI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선별을 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성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3년 1년 한시로 임시투자세액 공제 도입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정부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하면 투자가 한 6% 정도 늘고 그래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한 1% 가까이 늘 거다라는 그런 홍보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적으로 나타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효과는 별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동안에, 특히 이번 23년 부활했던 경우에 그 결과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효과는 크게 발생을 못 했고 대신 세수 손실이 3조 1000억 정도 크게 났단 말입니다. 굉장히 큰 세수 결손의 요인이 된 만큼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다.

그리고 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부분이 또 대기업에 귀착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분석에 따르면 1년 연장했을 경우 80%가 대기업에 귀착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물론 지금 대기업도 굉장히 선도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런 형평의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환급, EITC를 제외한다면 법인세 분야에서 이 환급제도 도입은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다.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조세제도의 변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결손금은 법인세에서 15년간 이월을 해 주고 있고 또 세액공제 자체도 지금 한 10년간 이월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완충적인 제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도 있겠지만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좀 진득하게 투자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또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 최저한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환급이 돼 버리면 이 최저한세 제도가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과세제도의 하나의 근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까지도 허물면서 환급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차관님이나 실장님 총괄 답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하나만……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인 인상 같은 것들은…… 국가전략기술이 뒤에 보면 있는데 반도

체, 이차전지 해서 쭉 이렇게 별도로 정해진 게 있고, 물론 반도체가 지금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한데 앞으로 이 중에서 성장할 분야가 좀 많고 그렇게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가적인 걸 해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제도 유지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국가가 생각할 때 좀 더 새로운 분야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공통적인 문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충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금 전문위원이 쭉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잘 이해하시겠지만 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조금 해 드리면,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 전체 제조업 중심의, 서비스업도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R&D와 설비투자 지원에 대해서, 아까 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R&D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설비투자는 전문위원 자료에도 나오듯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각종 의원입법안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확대하는 안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부안도 추가분에 대해서 확대하자는 것이고. 나머지 의원입법안들의 거의 전부가 반도체만 늘리자는 안이 있고 국가전략기술만 늘리자는 안이 있고 신성장까지 늘리자는 안이 있고 일반까지 늘리자는 안이 있고요.

그래서 그 늘리자는 대상이 다르고 또 지원 수준이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은 R&D만 늘리자는 안이 있고 설비투자까지 같이 늘리자는 안이 있고 또 설비투자만 늘리자는 안이 있고 그 끝에, 매트릭스로 따지면 지금 2 곱하기 3이 돼 있습니다. 지금 R&D 공제의 세 가지 분야, 일반·신성장·국가전략 또 설비투자 분야에 일반·신성장·설비 투자, 이 2 곱하기 3의 매트릭스에서 어느 걸 대상으로 하고 어디까지 올리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원입법안이 나와 있고 아까 또 추가적으로 말한, 이제 환급까지 가능하게 해 줄 것이냐 또 심지어는 양도까지 가능하게 해 줄 것이냐.

거기다 또 설명을 하다 말았지만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 대상을 AI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제기된 업종이 여기에 열거돼 있는 게 한 5~10개 회사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7개를 추가하자고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설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토지와 건축물도 해 주자,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투자만 하고 있는데 중고품도 해 주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안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기본 입장은 현재도 나름은 충분히 많이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은 꼭 뭔가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하는 쪽으로 해 가야지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거는 안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재정의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를 따졌을 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대상 업종이 아니고 대상 산업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나와 있지만 그중에서 안 위원님 제안에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가 AI를 우선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모아 봐야 되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AI가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수십 개의 안을 낸 것은 그만큼 신성장동력이라든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관심이 깊고 또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세제실장님한테 맡기지만 말고 차관님께서 직접 좀 챙기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안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1회독, 2회독 한다고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소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세제실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차관님이 총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챙겨 보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간단한 건데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어떤 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략기술, 이게 아마 코로나 때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R&D 수준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봐서, 물론 백신을 빼자 이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재편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백신이나 디스플레이도 실은 중국하고 지금 경쟁력이 거의 없어졌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최은석 위원** 물론 그중에 일부 영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기술격차를 벌려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국가전략이 모든 산업에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는 오히려 백신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신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5년, 10년 내에 따라갈, 어쩌면 영원히 못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AI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다시 한번 선정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현실적으로 이미 지원했던 분야를 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위원님들 뜻을 모아 주시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난해부터 계속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대

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래 세제 지원이라는 게 일반 시설이 있고 신성장·원천기술이 있고 두 가지 파트로만 나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꽤 넓은 범위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춰졌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앞으로 우리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굉장히 폭넓은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장이 있었는데 그게 2021년에 글로벌 미국이 촉발한 반도체와 배터리, 반도체와 배터리가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로벌 체인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미국이 촉발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신성장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한한다.

다만 그때가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백신이라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였으니까 백신은 좀 예외적으로, 그래서 백신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배터리, 3개 종목에 한해서 출발했던 것인데 그게 공제율이 좀 더 올라가면서, 그때 정태호 위원님도 지난 국회 기재위에 계셨지만 어떤 글로벌 체인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우리 경제의 고용이나 투자 이런 것 까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들어가고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디스플레이도 일종의 체인의 성격이 있다.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는 영역이 어디 있나 이런 측면이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또 의약품도 일부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계속 세제실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3단계 구조에서 끊임없이 대상이 늘어나면서 공제금액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지금 15%, 25%는 어마어마한 울이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0%였습니다. 기업들이 계속 10% 좀 해 주면 안 되냐, 지금 기업 투자가 어렵다. 그때는 보통은 3%, 5% 하다가 특별히 임투 하면 10%를 했는데 지금은 상시적으로 15%, 25%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업종들이 이제 나도 해 달라라는 제도 취지로 운영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산업인데 왜 지원을 과감하게 안 해 주느냐라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참 운영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길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요. 임광현 위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인데.

○임광현 위원 R&D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라서 2026년부터 28년까지 세수 감소, 법인세 감소 효과를 정부는 약 10조를 잡았고요. 그래서 연한 3.5조를 잡았고 국회예정처는 3년간 약 6.6조, 연 한 2.2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세수 효과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원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원 효과를 상당히 아주 많이 지원해 준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예정처는 그것보다 지원 효과가 작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너무 차이가 나서……

○전문위원 이정은 오늘 회의실에 예정처 분석관이 배석을 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박수영 이 자료 분석한 분이신가요?

○국회예산정책처세제분석2과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분석관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개정안에서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느냐 아니냐…… 개정안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만약 그러면 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연장이 됐을 경우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세수 효과라고 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여전히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액공제는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추계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세액공제가 없다라고 보고 추계하였기 때문에 저희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제실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의 미래와 관련되는, 엄혹한 경제환경 속에서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직접 쟁기시고 부총리하고 의논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정부안을 다시 정리하신 다음에 소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십 명의 의원님들이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것은 소소위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하고, 그다음 안건을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23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추가하자는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데 25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인공지능 분야 추가 및 인공지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 배제조항 예외 적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하고 또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조항의 예외로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AI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또 AI 기술 육성을 통해 국가안보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공지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이런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클라우드컴퓨팅 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 방위산업 분야 추가도 방위산업에 대한 R&D와 설비투자를 촉진해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방산 수출 제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세제 지원안입니다.

니다.

다만 이러한 방위산업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4년 2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추가되어 이전보다 R&D와 투자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탄소중립산업 분야 추가입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산업 기술에 대해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원자력 분야 추가입니다.

이 개정안도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해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미래형 선박 및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부 미래형 운송수단 관련 기술이 현재도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51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의 핵심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국가전략기술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간략하게 정부 입장을 말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까 세제실장님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야도 이미 다 신성장·원천기술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AI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중에서도 현재 산업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 예컨대 양자 같은 분야는 R&D 분야에서는 아주 국가의 미래를 주도 할 중요한 산업 분야로 중시가 되고 있지만 현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보고 있는 분야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분야는, 아까 김태년 의원님도 반도체 분야랄지, 진짜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산업 분야로 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주장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전략기술에 들어갈 텐데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지원액은 또 얇아지는, 1/N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발언…… 손 드셨던가요?

○임광현 위원 예.

저는, 이 전략기술이라든지 또는 신성장기술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 어떤 평가 요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을 하느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는 관계 부처에서 건의를 하고요. 예를 들면 미래형 이동수단이 지난번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술과 시설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련되는 국토부나 산업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풀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당 전문가 또 발제하시는 분, 부처에서 다 와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내부적인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접을 보듯이 평가표에 의해서 효과성……

하여튼 몇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또 점수를 매기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세수 효과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그 평가표 양식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요소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국가전략기술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수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S전자하고 L전자, 2개 다 글로벌기업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S전자는 무지 효자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L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알 겁니다. 해외에 다 현지법인이 있고 그쪽에 내고 여기는, 본사는 로열티나 그런 것 정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2개를 같이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전략산업이 반도체다 그러면 여기는 일자리창출은 적지만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니까 이것을 국가전략기술에서는 가중치를 두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조선업이다, 조선업도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을 따돌렸다고 그러던데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또 조선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화도 벌면서.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도 그 전략기술 선정의 요소로 넣겠다라는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인,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백년대계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환급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차감 방식이다 보니,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업이, 그 기업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오히려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좋은 기업은 오히려 혜택을 보고 초기에 투자를 막 해 가지고 아직은 궤도에 올라가지 않아서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은 오히려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제도의 취지는 후자를 지원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저는 고려를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으로 나가 주시고요. 아무래도 소소위에서 토의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을, 좀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2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고요.

이 개정안들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화 시설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은 투자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데 좀 장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 또 시험연구용자산은 3년 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특례규정이 있어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투자금액은 가속상각을 통해 투자금액을 지금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간단하게 의견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현재 R&D 활동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을 지원 중입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R&D 장비·시설은 가속상각으로 지원 중으로 추가적인 확대 부분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도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정은 2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아까는 시설 투자에 관한 거고 이것은 이용료에 관한 세제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이용료 부담 완화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연구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또 중소기업은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 세액공제와 또 기존 일반 분야 R&D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25%로 동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 혜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정부가 기발표한 국가전략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R&D 세액공제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현행 정부안처럼 지원하는 게…… 박성훈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아마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굳이 신설할

필요 없지 않나 하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 정도로 저희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2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생산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역시 다른 산업과 다르게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대해서만 이러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대부분 국가에서 토지·건축물을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아마 일부 엄격한 요건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스탠더드라고 보기 어렵고 제품 생산하고 직접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270페이지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에 임대용 자산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용 자산은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 연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투자 관련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R&D 투자 및 설비 투자를 확대하여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존에는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대부분 이월공제를 10년으로 늘린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진짜 꼭 필요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그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기업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20%p 상향하려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R&D 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이러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가지는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세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저희가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취지는 다른 세제로 지원하는 게 맞지 이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극단적인 예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70%까지 상승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80페이지, 지금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규직 등 우대공제 대상 공제액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청년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우대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을 200만 원씩 상향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22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청년 정규직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이미 한 차례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저희 정부안을 통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현행 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당국의 이의 제기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제도 개편하고 같이 저희가 상향 여부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라 번 논의할 때 정부 입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러면 일단 나 번은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정은 285페이지를 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자 또 육아휴직자 등을 대체하는 인력을 추가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또 육아휴직 신청 기피요소를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체인력 고용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똑같이 세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는 육아휴직·복직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인데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신영대 의원님 안이라서 계신 데서 논의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고용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지원 방식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고용 지원 대상에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하고 또 탄력고용 정률 지원을 도입하며 또 사후관리를 폐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탄력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의 신규 도입을 통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을 확대할 수 있으며 또 사후관리 폐지를 통해 고용유지 및 세액공제액 추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게 탄력고용을 늘릴 유인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이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 또 고용유지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특례 혜택이 2025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현재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경정청구도 너무 많고 기업 입장에서 실제 이 부분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간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정부는 제도를 설계했고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저희 기재위 전체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포함해서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비정규직을 좀 더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더 비정규직을 고용할 유인이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저희 세제실장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 설명을 듣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현행 제도가 지금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규직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상시적으로 근로만 하면 상시근로자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도 상시근로자고.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 그리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만 빼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빼지고 나머지는 다 상시근로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1인당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완전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0.5명, 0.75명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년 뒤에 고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 주고 고용이 감소하면 일부를 가져가고, 전부를 가져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제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할 때는 이것을

신고를 못 합니다.

내부적으로 신고를 못 하고 끝나고 나서, 전국에 통합고용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나서 가지고 ‘내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 줄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꽉 계산해서 경정청구가 들어옵니다.

경정청구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또 그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만 받으면 끝인데,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나가서 조사하는 기업은 추징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신고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고 자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국의 기업들에게서 경정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국세청이 무작정 다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돈을 다 내보낼 수도 없고 또 하나하나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세무서가 범인세 신고 끝나고 나면 그 경정청구권이 밀려와 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대한 간소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국세청의 너무 심각한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돼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까지 조금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단시간 근로하면 실제 연간 임금이 10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에 대해서는 1550만 원을 공제를 해 주거든요. 인건비보다 오히려 공제액이 더 많은, 그래서 그냥 단시간을 쓰고서 오히려 범인세를 더 많이 깎아 먹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는, 형평에 안 맞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어쨌든 매 연말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정규직이 과연 몇 명이냐’, 정규직 숫자를 따져 가지고 전년보다 높으면 해 주고 전년보다 내려가면 안 해 주고.

그리고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몇 명을 고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임금 총액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사람을 고용했으면 임금을 많이 올려 준 결과고 만약에 사람을 더 뽑았으면 인원이 늘 결과고 그 임금 증가를 기준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이 지나서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서 오히려 더 크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계약의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 가지고 새롭게 초단시간을 더 유도하고 이런 효과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고 조금 더 상의를 드릴 텐데 만약에 그게 계속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빼는 대안도 저희들은 같이 상의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소화는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아마 임 위원님 이야기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행정적 부담이 크니까 나온 대안 같은데 아무튼 고용이 일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세액공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고용이 제대로 유지된 것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되는 게 많은데 저는 이것까지 간소화 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사후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 이런 건가요? 사후관리 폐지라고 돼 있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사후관리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에 청년이 몇 명 늘었느냐, 전체로 몇 명 늘었느냐 또 청년 외에 증가했느냐, 굉장히 복잡한, 청년과 청년 외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초단시간과 단시간, 0.75명짜리 0.5명짜리 1명 짜리,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너는 추징 대상이구나’, ‘너는 추징에서 제외되는 구나’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심플하게 그냥 추징은 없애고 어쨌든 뭔가 증가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으면 일단 1년 딱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요건에 안 맞으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안 받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일 했을 때 한 번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일로 계속 가면 한 번 더 주고 못 하면 그냥 빼면 되는 거지 이게 추징까지 들어가면 어쨌든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충족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당한 수준의 폐널티면 충분하다, 그렇게 간소화하자는 겁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작년보다 올해 고용 인원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것만큼의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오기형 위원** 그리고 1년 지나서 그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줄어들면 끝.

○**오기형 위원** 1명이라도 줄어들면 끝.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어쨌든 1년간 는 것은 맞으니까 1년은 받아라.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데 계속 늘리면 한 번 더 준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왜 종래에 제기된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사후관리가 문제가 된 이유가요?

○**오기형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과거에는 정확하게 하고 싶었겠지. 과거 시스템은 정확하게 일일이다 따져서 안 된 사람들 추징하려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추징 안 하게 되면 이제 사후관리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요건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요건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오기형 위원**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2년 이내에 감소하는 경우는 그렇다는 거니까 한번 그 혜택을 받아서 늘렸으면 최소한 2년은 유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제도를 바꾸면 2년 유지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변화라서 이게 적절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번 늘리고 그다음에 못 늘렸을 때……

○**오기형 위원** 이것과 제가 좀 다른 게 이 특정 사람에 대해서 근로자를 더 추가 채용

을 했는데 그 추가 채용하고 나서 1년 지나면 해고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2년을 유지해야 되는 거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제도의 취지인가. 일정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면 사후관리 제도가 왜 없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무슨 취지인지는, 저도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고용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정년이라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복잡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0.5, 0.75, 1명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연말 기준으로 작년에 100명이었고 올해 101명이면 ‘오, 1명 늘었네’ 1년치 일단 드리고, 그런데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은 계속 고용을 하고 있고 2명을 더 신규 채용을 했는데도 3명이 퇴직을 해 버렸다, 그래서 도로 100명으로 돌아갔네, 그러면 1년만 잘한 거고 2년째는 잘한 게 없으니까 1년짜리는 그냥 드시라. 과거에는 또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그때 실패를 하면 1년차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2년차까지도 성공했는데 3년차에 실패하면 또 1년까지 돌아가 가지고 ‘야, 이것 하려면 한 3년 했어야지, 2년 했어야지’ 해서 옛날 것까지 다 추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매해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 단순하게 줄 건 주고 스토타일 건 스토타일 시키고 그 정도면 충분한 사후관리 아니냐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그런데 연말 기준…… 제도는 알겠는데요. 이것 제가 마음 먹고 악용하려 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1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기간제도 다 넣어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만 사람 늘렸다가 2개월 쓰고 잘라도 이것……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게 정의는 아니고요. 연말 기준으로 1년 이상 고용한 자.

○**천하람 위원** 연말 기준으로 1년 이상 고용한 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1년 이상 고용된 자의 숫자를 따지는 겁니다, 1년 이상 정규직만.

○**천하람 위원** 1년 이상 정규직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1년 반짜리 계약직 이런 건 아니고요.

천하람 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그렇게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세청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임광현 위원님 손 드셨는데……

○**천하람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소위원장 박수영** 또 있습니까? 먼저 하시지요.

○**천하람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최근에 꼭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 인정 안하고 기 쓰다가 나중에 퇴직금 분쟁이나 근로관계법 분쟁이 있어서 노동청이나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가 가지고 소급해서 근로자성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본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후적으로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다 경정청구 받아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면 현행 제도상으로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천하람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현행 제도상으로는 결국은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그 사람이 근로소득세를 낸 사람으로서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 당시에는 사업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나는 사업주 네 생각대로 따르겠어. 우리 고용증대세제에서는 사업주 말이 맞지’ 뭐 그렇게…… 이 법규정이 엄격하게 돼 있지 않다면 저희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또 별도 규정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드셨는데……

○**윤호중 위원** 아, 말씀하세요, 위원님.

○**임광현 위원** 사후관리는 행정집행 차원에서 간소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게 탄력고용입니다. 지금 탄력고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이게 비정규직 양산하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시행을 해 봄아 될 것 같고.

이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계속고용하고 탄력고용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나누는데 계속고용은 분명 큰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이고 탄력고용은 영세, 직원 얼마 안 돼 가지고 정규직 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직원들을 쓸 수 없는 영세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안 하면 오히려 작은 기업들이 더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상 오래 장기 근로자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탄력고용은 한번 해 보고 정책 효과를 한번 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세법인들에 대한 혜택이 될 거니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업무 부담 때문에 사후관리를 간소화한다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거의 폐지한다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추징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요. 이 추징을 안 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제도 설계 자체가 그렇게 계속 고용을 유지하라는 취지인데 그것을 추징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또 없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그러니까 추징 절차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징 절차라는 것은, 이게 연말에 한 번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연말정산 시에 거의 모든

피고용인들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미 자료는 세무서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연말정산 시 한 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추징하고, 추징하는 것도 고지서 발부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법인세나 이런 데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절차를 간소화하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징까지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 조금 정확하게 못 알려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더 증대시키거나 유지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 한테 3년치를 줍니다. 1년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증대한 인원 1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세 번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죽 어쨌든 100명에서 101명이 되면 1명치를 3년을 줍니다. 101명이 102명 되면 계속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또 3년을 줍니다. 103명이 되면 또 3년치를 줍니다. 그런데 101명이 되었다가 100명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면 1년만에 백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만 먹고 떨어져. 너는 3년 못 쥐’ 해 가지고 그냥 1000만 원만 주고 끝내는 거지, 이게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캡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1년차, 2년차에서 실패를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먹었던 것을 나중에 가서 도로 뺏어 가기까지 하는데 더 주는 것을 스톱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느냐……

○**윤호중 위원** 그러면 천하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은 그걸 이용하는 게 특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3년차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을 1년만 탁 먹고 빠지고 탁 먹고 빠지고 그렇게…… 더군다나 이 1년 그렇게 적용받는 사람들은 고용의 계약기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기계약직 또는 완전 정규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의에 의해서 나가거나 휴직을 하거나 명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

1명을 계약 기간 없이 붙였다가 그래서 1000만 원 먹고 다시 빠진다? 아무리 1000만 원 먹고 빠져 봐야 그 사람 인건비가 이미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갔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뽑았을 거고 필요 없는 사람이 다른 변수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갈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세금을 빼먹으려고 장난칠 여지는 없게 설계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이 제도의 목표가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고용을 더 하라는 거지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고용을 늘리는데 탄력고용 노동자들 늘리는 것도 목표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탄력고용을 그래서 인원수로 하지 않고 임금을 좀 더 주었으면 좋겠다, 임금을 늘리면 지원하겠다. 거기에서 사람 수로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한 16시간 일해도 지금 적용되거든요, 초단시간 15시간 아닌.

○**정태호 위원** 정부 목표는 상시고용을 늘리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래서 그쪽에 훨씬 더 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원을 더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였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없는 재원에 탄력고용이 늘어나는 데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부 목표가 있다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금도 탄력고용에 대해서 지원을 무리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6시간 일하는 탄력고용은 해 주고 14시간 일하는 탄력고용은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정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시고용에 더 목표를 두고 정부 정책이 가야 되는 건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상시고용에 목표를 두고 간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거기에는 강화를 시키고.

○**정태호 위원** 그 논거를 대 보셔요. 아까 말씀하실 때 탄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상시고용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 상시고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더 강화됐고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시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탄력고용하고 그게 무슨……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리고 비정규직의 탄력고용에 대한 지원 수준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냐 이거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관계가 뭐냐고 말씀하시면……

○**정태호 위원** 아니, 기존의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지금 탄력고용 부분을 늘린 것 아니에요? 추가로 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상시근로자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계속고용 또는 정규직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말하는 상시근로자만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6시간 일하는 단기근로자도 상시근로자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정태호 위원** 그게 아니지. 16시간 이하는 단시간노동자지. 통계청 용어에 의하면 단시간노동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상시근로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그 사람이 1명 늘 때마다 지금 1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1년 이상이면 상용직이라 그리고 15시간 이하면 단시간노동자라 그리고 1년 이하면 임시직이라 그러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굳이 왜 탄력노동…… 탄력노동이라는 게 사실은 임시직이거든. 그 임시직을 왜 자꾸 늘리겠다고 거기에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 지금도 임시직을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정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상시고용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또 새롭게 하느냐 이거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은 그러면 비정규직 또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아예 배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봐서 넣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임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실제로 15시간 지금……

○정태호 위원 그리고 탄력노동 또는 임시직을 많이 쓰는 데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중견기업으로 갈수록 넓어져요. 왜 그러나 하면 그쪽은 단순노동이 많이 확대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운전이라든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대량으로 탄력노동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대기업 외에는. 그렇잖아요. 대기업, 공무원 되는 게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데에서 상용직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쪽에 더 길을 열어 주는 꼴이 돼 버리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러니까 초단시간에 길을 열어 줬고요. 단시간에 이미 열려 있었고 그걸 지원을 줄이는 부분이고, 초단시간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정태호 위원 하여튼 논란이 많아요, 이 부분에도. 지금 전문위원도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셨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이 되시면 탄력고용 부분은 날리겠습니다. 계속고용만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세요. 안 맞아요, 그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은 이 탄력고용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중견·중소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또……

○임광현 위원 중견도 제외하고 그러면 아주 영세기업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어떻게 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소만 하셔도 좋고 아예 날리셔도 좋고.

○정태호 위원 하여튼 이것 일단 보류를 해 놓고요. 좀 더 의견을 들어 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박수영 아마 차관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걸 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좀 전에 실장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 뜻을 모아 주시면 탄력고용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이것을 보류했다가 한번 재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옆의 속기사님 비롯한 직원들 모두한테 6시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한 5건 남아 있는데 이것 했다가는 시간을 넘길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7시에 행사도 있으신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산회를 한 다음에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이종욱 임광현 정태호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국회 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 박경환